

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과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2015. 12.

김 학 수

서 언

최근 국세수입이 예산안 작성 시 전망했던 수준을 하회하며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예산 대비 세수 부족현상은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비판을 낳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때 민간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여 경기의 추가적 위축을 방지하는 역할이 자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세계가 경기에 대응하여 자동적으로 일정 부분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적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경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경기 변화를 감지하고 정책대안 마련과 집행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의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은 이러한 시행 시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주요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세계를 포함한 재정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에 관한 연구는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시기에 주로 관심을 받고 수행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경기 변동을 반영하는 조세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세수와 주요세목의 과세베이스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원의 김학수 박사가 현재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국면별 세수의 변동성을 살펴보고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가용자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 보고서에 담고 있다. 향후

이와 관련된 보다 많은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가용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학수 박사는 중간 및 최종보고 세미나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익명의 외부 심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검토되는 수많은 통계자료의 정리 및 분석을 잘 수행해 준 김현숙 전문연구원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의견이며, 저자가 속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약 및 정책시사점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세수와 경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경기 확장기에는 세금을 보다 많이 징수함으로써 추가적 경기과열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세금을 보다 덜 징수함으로써 추가적 침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조절 기능, 즉 자동안정화 기능은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명시적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출 조정과 달리 정책 집행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 큰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그간 국내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시험적 연구로서 주요 세목의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경기국면별 특성을 살펴보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기존 해외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평가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의 움직임보다 크지만 2000년 이후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변동성은 과거보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세베이스 및 세수의 증가율이 과거보다 둔화되면서 세수탄성치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간별 예외가 관측되기는 하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와 세수는 수축기에 대체적으로 높은 경상GDP 대비 탄성치를 보인 반면 법인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축기에 낮은 탄성치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세목 중 법인세가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법인세의 국제통계 과세베이스인 흑자법인소득과 과세표준은 2007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음(-)의 수축기 탄성치를 보이며 최근 법인세수 감소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으며 법인세 경기조절 효과의 근원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에 제시된 방법 중 세 가지 방식의 평가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세제의 자동안정화 기능 관련 초기 연구에

서 사용된 케인즈의 승수모형을 사용하여 주요 세목 및 총국세수입의 경기 조절 기능을 평가했다. 또한 조세관련 지표와 실질GDP의 경기변동분 사이의 상관분석을 통해 경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기조로 운용되어 왔는지를 분석했다. 그러나 총량지표를 사용하는 앞의 두 방식은 세계개편에 따른 경기 자동안정화효과의 변화를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납세자료의 활용이 필요하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개별 납세자료의 일부 항목을 유추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히 개별 기업의 신용평가정보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법인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에 의존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효과의 고전적 추정방법인 승수효과모형을 이용한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경기 자동안정화효과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여타 세목의 실효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기조절 기능은 연도별 등락을 보이지만 추세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소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면 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이후 수축기의 경기조절 기능이 확장기의 경기조절 기능보다 더 크게 관측됐고, 법인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수축기의 경기조절 기능이 지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경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경기 국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기보다는 평탄한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기침체에 세수 부족분을 부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조세평탄화(tax smoothing) 이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경기국면에 따라 세율을 달리 조정해서 확장기의 추가적 확장을 억제하고 수축기의 추가적 수축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경기조절보다는 우리 정부는 경기 수축기에 발생한 세수부족분을 채무로 조달하고 경기 확장기에 발생한 세수 여유분으로 상환하는 형태의 조세정책 운용기조를 견지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세목별 분석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관측되는데, 실질GDP의

추세를 제거하는 필터링 기법에 따라 실질GDP 경기변동분과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추정되며 일의적으로 조세정책 운용기조를 경기순응적 내지 경기역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가 원용하고 있는 기존연구들인 Devereux and Fuest(2009)와 Buettner and Fuest(2010)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신용제약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들은 경제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제를 통해 투자위축 완화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의 법인세 경기 자동안정화효과는 내부재원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신용 제약기업들 중 흑자법인으로서 법인세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들의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를 측정한 결과, 기업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신용 제약기업 여부와 흑자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연평균 5% 수준의 투자위축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 제약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재무정보에서 활용하고 흑자법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국세통계연보에서 찾는 경우 연평균 2% 미만의 낮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율인상과 결손금처리 방식의 변경이 경기조절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은 경기조절 효과를 0.2%포인트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본 분석에서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방식으로 세무상 세전소득을 추정하고 있는데, 결손금을 이월공제가 아닌 완전 소급공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약 5~6%포인트 정도의 경기 자동안정화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결손금 처리방식을 소급공제제도로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제도 개편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먼저 세율 인상은 효율성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기 확장기에 현 세율 체계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을 추가적으로 억제하는 대가로 경기 수축기에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로의 개편은 경기 수축기에 늘어나는 적

자법인들이 과거에 낸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은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신용제약 흑자기업들이 투자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이 무리한 가정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신용제약기업 중 흑자법인의 비중이다. 투자재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운 신용제약기업 중 흑자법인의 비중이 높을수록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는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이후 신용제약기업 중 흑자법인의 비중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소폭이나마 확대추이를 보였으나 2004년 66.2%를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44.1%로 나타난다. 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영세한 신용제약기업들이 보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만성적인 적자기업들의 퇴출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목 차

I. 서론	15
II. 경기국면별 과세베이스 및 세수 변동성	21
1. 경기순환국면 개관	21
2. 주요 세목의 경기국면별 과세베이스 변동성	23
가. 소득세 과세베이스	23
나. 법인세 과세베이스	29
다.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	35
3. 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	40
가. 총국세	40
나. 소득세수	44
다. 법인세수	46
라. 부가가치세수	48
마. 그 밖의 기타 세수	50
4. 과세베이스 및 세수 변동성의 특징	53
III.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실증분석	56
1. 분석방법	56
가. 기존 연구	56
나. 본 연구의 분석방법	59
2. 승수모형을 이용한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	68
가.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	68
나.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	72
다. 부가가치세의 경기조절 효과	74

라. 3대 기간세목의 경기조절 효과	77
3. 실질GDP 경기변동분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79
4. 미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기능	86
가. 사용자료	86
나. 측정결과	89
5. 세제변화에 따른 경기조절효과	96
가. 법인세율	96
나. 기업의 결손금 처리방식	98
6. 요약 및 시사점	101
IV. 결론	105
참고문헌	108
부록	110

표목차

〈표 II-1〉 경기순환주기별 지속기간	23
〈표 II-2〉 경기국면별 소득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27
〈표 II-3〉 경기국면별 소득세 합계소득과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28
〈표 II-4〉 경기국면별 소득세 과세표준과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29
〈표 II-5〉 경기국면별 법인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33
〈표 II-6〉 경기국면별 법인세 흑자법인소득과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34
〈표 II-7〉 경기국면별 법인세 흑자법인 과세표준과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35
〈표 II-8〉 경기국면별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와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39
〈표 II-9〉 경기국면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39
〈표 II-10〉 경기순환국면별 국세수입과 경상GDP 추이 및 세수탄성치	43
〈표 II-11〉 경기국면별 소득세수입과 경상GDP 추이 및 세수탄성치	45
〈표 II-12〉 경기국면별 법인세수입과 경상GDP 추이 및 세수탄성치	48
〈표 II-13〉 경기국면별 부가가치세수입과 경상GDP 추이 및 세수탄성치	50
〈표 II-14〉 경기국면별 기타 세수입과 경상GDP 추이 및 세수탄성치	52
〈표 II-15〉 주요 세목의 과세베이스 및 세수의 분포 특성 및 경기국면별 특징	55
〈표 III-1〉 세목별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	62
〈표 III-2〉 소득세의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 기간별 평균	70
〈표 III-3〉 법인세의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 기간별 평균	73
〈표 III-4〉 부가가치세의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 기간별 평균	75
〈표 III-5〉 3대 세목의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 기간별 평균	78
〈표 III-6〉 실질GDP와 총국세의 상관관계: 전 기간	82
〈표 III-7〉 실질GDP와 총국세의 상관관계: 2000년 전후	83

〈표 III-8〉 실질GDP와 소득세의 상관관계: 전 기간	83
〈표 III-9〉 실질GDP와 소득세의 상관관계: 2000년 전후	83
〈표 III-10〉 실질GDP와 법인세의 상관관계: 전 기간	84
〈표 III-11〉 실질GDP와 법인세의 상관관계: 2000년 전후	84
〈표 III-12〉 실질GDP와 부가가치세의 상관관계: 전 기간	84
〈표 III-13〉 실질GDP와 부가가치세의 상관관계: 2000년 전후	85
〈표 III-14〉 실질GDP와 기타 세목의 상관관계: 전 기간	85
〈표 III-15〉 실질GDP와 기타 세목의 상관관계: 2000년 전후	85
〈표 III-16〉 외부감사 대상 법인 재무자료 현황	88
〈표 III-17〉 Deveruex-Fuest 경기조절 효과	90
〈표 III-18〉 경기국면별 Deveruex-Fuest 경기조절 효과: 이월결손금공제 적용	93
〈표 III-19〉 Buettner-Fuest 경기조절효과	94
〈표 III-20〉 경기국면별 Buettner-Fuest 경기조절 효과	96
〈표 III-21〉 결손금 처리방식에 따른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 비교	99
〈부표 II-1〉 경기순환국면별 경제동향	113

그림목차

[그림 II-1] 경기순환국면 도표	22
[그림 II-2] 소득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25
[그림 II-3] 소득세 국세통계 과세베이스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26
[그림 II-4] 법인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31
[그림 II-5] 법인세 흑자법인소득과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32
[그림 II-6] 법인세 과세표준과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32
[그림 II-7] 부가가치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37
[그림 II-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38
[그림 II-9] 우리나라 경기변동과 국세수입 증가율 추이	40
[그림 II-10] 국세수입과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41
[그림 II-11] 소득세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44
[그림 II-12] 법인세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46
[그림 II-13] 부가가치세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49
[그림 II-14] 기타 세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51
[그림 III-1]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	71
[그림 III-2]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추이	71
[그림 III-3]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기준	74
[그림 III-4]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추이	74
[그림 III-5] 부가가치세의 경기조절 효과: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기준	76
[그림 III-6] 부가가치세의 경기조절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추이	76
[그림 III-7] 3대 세목의 경기조절 효과: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기준	78
[그림 III-8] 3대 세목의 경기조절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추이	79
[그림 III-9] 경기동행지수 변화와 DF 경기조절 효과: KISVALUE 적자기업 비중	92

CONTENTS

[그림 Ⅲ-10] 경기동행지수 변화와 DF 경기조절 효과: 국세통계 적자기업 비중	92
[그림 Ⅲ-11] 경기동행지수 변화와 BF 경기조절 효과	95
[그림 Ⅲ-12] 경기조절 효과 비교: 완전 소급공제 vs 이월결손공제	99

I. 서론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경제충격에 대응하여 정부가 재정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충격에 대해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안정화 기능이 자동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정부의 명시적 대응과 함께 경기가 조절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은 재량적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세수와 경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경기과열 억제 및 경기침체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제에 내재되어 있는 자동안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경기가 활성화될 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함으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 세금을 적게 징수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완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세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은 경기 확장기에 경제주체들의 소득에 발생한 양(+)의 충격을 보다 많은 세수를 징수함으로써 세제가 없을 때보다 작게 만들고 경기 수축기에는 경제주체들의 소득에 발생한 음(-)의 충격의 절대 규모를 세제가 없을 때보다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지출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기능은 경기가 좋은 시기에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경기의 과열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경기에 대응한다. 비록 세제와 재정지출의 경기국면별 움직임은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경제주체의 소득에 미치는 경기국면별 영향은 재정지출이나 세제의 경우 모두 경제주체들의 소득 변화의 정도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경기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량적 정책은 경기 변화와 정책 시행 사이에 시차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특정 조세정책을 특정 시점에

명시적으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미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 경기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작동되기 때문에 정책 시행의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세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은 정부의 재량적 재정지출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축소하며 효과적인 경기조절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조절을 위한 재량적 재정지출의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정치 과정에서 재량적 재정지출의 조정은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량적 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더라도 정치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며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한번 확대되면, 재량적 재정지출이라도 쉽게 축소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 변화와 재량적 재정지출의 정책집행 사이의 시차문제 이외에도 재량적 재정지출의 조정을 통한 경기대응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경기 국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지출 분야의 선택도 중요하다. 재량지출 이외에 제도적으로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지출도 있다. 경기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변동하며 자동적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재정지출의 대표적인 제도가 실업급여제도이며 실업급여의 자동안정화 기능 관련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

경기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 재정지출 총량 및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으나 세계 분야의 경기조절 기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한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국내연구는 박기백(2001), 박기백·박형수(2002) 등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들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세목별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한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수는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세후 소득을 조절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과열과 위축을 경기 상황

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하여 정부재원 조달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지만, 경기 수축기의 세수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세 전환은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기변동에 대한 자동안정화 장치로서 세제가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가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자동안정화 장치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국세수입의 변동성은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세수입 예산 작성 과정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의 경제적 충격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다. 국세수입 총량과 소득세수 및 법인세수 등 주요 세목이 경기 변동에 따라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수 전망 방법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경기국면별로 과세베이스 및 세수의 변동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고 주요 세목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강력한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경기변동을 더 원활하게 축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세제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는 정책목표라기보다는 다른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다양한 재정정책과 재정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산물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세수규모가 크고 세제가 누진적일수록 더 크다. 그러나 Baunsgaard and Symansky(200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수규모나 세제의 누진도는 경기조절 기능이라는 정책목표보다는 국가의 역할, 형평성, 복지제도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규모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경기 자동안정화라는 목적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모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효율성 비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규모를 결정짓는 세수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세제의 누진도

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인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재량적 재정지출보다 바람직한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정부의 규모나 세계의 누진도를 무한히 확대할 수 없다. 그러나 Baunsgaard and Symansky(2009)를 비롯한 기존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정부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세계의 경기조절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은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세계의 경기조절 기능을 측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먼저 경기국면별로 주요 세목의 과세베이스와 세수의 변동성을 살펴보면서 경기 변화에 대해 과세베이스와 세수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가용자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기초자료 분석과 함께 세목별 경기조절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세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조절 기능의 크기는 총수요에 발생한 충격이 세제에 의해 얼마나 흡수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모든 세제는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Musgrave and Miller(1948) 등 관련 초기 연구들은 소득세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제가 누진적일수록 자동안정화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누진구조가 강하게 설계되어 있는 소득세가 주요 분석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세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조절 기능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비세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 문헌상 찾을 수 있는 최초의 관련 연구인 Musgrave and Miller(1948)은 법인세를 개인소득세와 합한 소득세수를 이용하여 세계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분석하고 있으며 논문 말미에 미국의 개별소비세(excise tax)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는 연구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Auerbach and Feenberg(2000)도 법인세수의 큰 변동성은 연방세수입의 변동성을 상당부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세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의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세수는 경기의 변화에 대해 어느 세목보다 민감하게 반응하

기 때문에 세제와 경기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법인세수는 매우 변동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OECD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3단계 초과누진구조를 갖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누진적이라 볼 수 있다.¹⁾ 따라서 법인세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이 전체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법인세의 자동안정화 기능에 관한 연구는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전까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경우에도 누진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나 세수의 변동성이 전체 경제의 변동성보다 크고 농수산물, 생필품,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usgrave and Miller(1948)은 미국 개별소비세를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의 또 다른 경로로 언급하고 있으며 Baunsgaard and Symansky(2009)도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의 일시적 인하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며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가 관찰하는 연도별 조세 관련 변수들은 대부분 총량지표로서 세제의 구성요소별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납세신고서와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매우 엄격히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용 자료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총량자료를 사용하는 분석과 함께 국세청

1)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최고 38%까지 부과하는 법인세의 법정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한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균 실효세율은 우리나라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규모의 법인들이 가장 높은 평균 실효세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누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학수(2013)를 참조하기 바란다.

세부자료를 다소나마 추정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법인세에 한하여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 및 일부 세제의 구성요소의 변화에 따른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에서 경기국면별로 주요 세목의 과세베이스와 세수의 변동성을 살펴본다. 과세베이스의 경우 국제통계상의 과세베이스와 국민계정상의 과세베이스를 모두 살펴보고 경기국면별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은 조세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평가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현재 우리에게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동안정화 효과 측정방법과 측정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서 주요 세목의 세수 및 과세베이스 변수들의 경기변동분과 실질GDP의 경기변동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세수 및 과세베이스 변수들이 경기 역행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경기국면별 과세베이스 및 세수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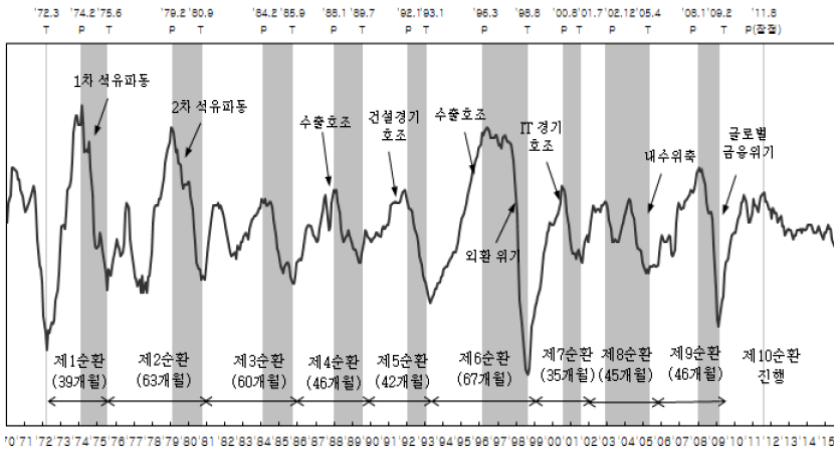
1. 경기순환국면 개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72년 3월 이후 우리 경제는 2009년 2월까지 9번의 경기순환을 경험했고 2009년 2월 이후 2015년 8월 현재까지 제10순환국면에 있으며 제10순환의 정점(잠정)인 2011년 8월 이후 매우 긴, 그러나 진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수축기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2009년 2월 저점 이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며 2011년 8월까지 확장기가 진행됐다. 이후 지속되는 세계경기 불안과 함께 내수회복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수축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초반과 후반의 석유파동으로 두 차례의 순환주기가 있었으며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 및 건설경기 호조 등에 기인하여 제3순환부터 제6순환 주기를 경험했다. 제6순환의 정점인 1996년 3월 이후 수축기가 진행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세계경제의 IT 호황과 더불어 제7순환의 확장기를 시작했으나 2000년 IT 버블 붕괴와 함께 수출부진 및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수축기가 진행됐다. 여타 주기의 진폭보다 적게 나타난 제8순환에서는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 회복에 의해 경기 확장이 견인됐다. 그러나 카드사태 등에 의해 소비와 투자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2002년 12월 이후 2005년 4월까지 우리 경제는 수축기에 접어들었다. 제9순환은 내수 회복과 함께 수출 확대에 힘입어 꾸준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확장기를 시작했으나 유가급등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세계 경기둔화로 수출 및 내수 모두 급락하게 되며 2009년 2월 저점을 기록했다.

제9순환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경기순환주기는 약 49개월이며 확장기와 수축기의 평균 지속기간은 각각 31개월과 18개월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제10순환 국면은 2009년 2월 이후 2015년 8월 현재까지 78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험한 경기순환주기 중 가장 긴 지속기간을 보였던 시기는 제6순환 국면으로 총 67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제10순환 국면은 이보다 최소 13개월 이상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0순환기의 확장기는 제9순환 국면까지의 평균 수준인 31개월과 유사한 30개월 동안 지속됐으나 2011년 8월 이후 48개월 동안 수축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과거 주기별 평균 수축기간인 18개월을 크게 상회하며 1972년 이후 가장 긴 수축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그림 II-1] 경기순환국면 도표



자료: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p.79.

-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축기는 2013년 초반을 저점으로 10순환기는 종료됐고 11번째 순환 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통계청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10 순환기의 수축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보다 상세한 경기순환주기별 주요 경기동향은 부록에 제시된 통계청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1〉 경기순환주기별 지속기간

(단위: 개월)

	기간	정점	지속기간	확장기	수축기
제1순환	1972. 3~1975. 6	1974. 2	39	23	16
제2순환	1975. 6~1980. 9	1979. 2	63	44	19
제3순환	1980. 9~1985. 9	1984. 2	60	41	19
제4순환	1985. 9~1989. 7	1988. 1	46	28	18
제5순환	1989. 7~1993. 1	1992. 1	42	30	12
제6순환	1993. 1~1998. 8	1996. 3	67	38	29
제7순환	1998. 8~2001. 7	2000. 8	35	24	11
제8순환	2001. 7~2005. 4	2002.12	45	17	28
제9순환	2005. 4~2009. 2	2008. 1	46	33	13
제1순환~제9순환 평균			49	31	18
제10순환	2009. 2~	2011. 8	78 이상	30	48 이상

주: 제10순환 주기의 지속기간은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pp.77~78.)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주요 세목의 경기국면별 과세베이스 변동성

가. 소득세 과세베이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의 유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8가지 유형의 소득 중에서 퇴직 및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의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의 일정부분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과세 종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이다. 개인소득세 과세베이스의 근간은 개인납세자의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합계소득으로부터 소정의 공제감면 이후 도출된 과세표준은 좁은 의미의 소득세 과세베이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법상 개인소득세 과세베이스의 출발점은 국민계정상의 임금 및 급여와 가계부문의 영업잉여이다.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본원소득분배 계정 항목 중에서 ‘임금 및 급여’가 국민계정상의 근로소득의 과세베이스에 속한다. 그러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사업자의 노동투입에 대한 임금 성격과 투자 자본의 수익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혼합소득이다. 따라서 국민계정상의 ‘임금 및 급여’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의 합계가 개인소득세 과세베이스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⁴⁾

여기서 개인소득세 과세베이스 변동성이 경기국면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계정상의 개인소득세 과세베이스와 국세통계연보상의 과세베이스인 합산소득 및 과세표준의 경기국면별 변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국면별 변동성은 각 지표의 증가율 분포와 GDP 대비 탄성치를 경기국면별 및 기간별로 살펴본다.

1) 증가율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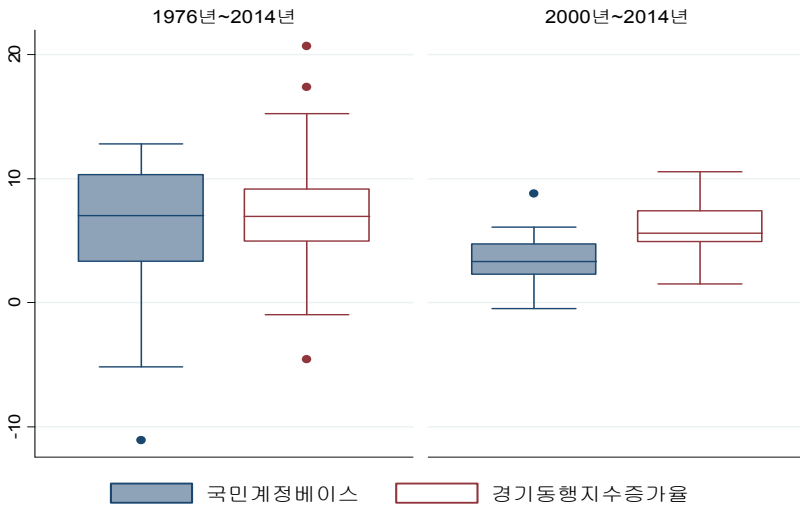
[그림 II-2]는 box plot을 이용하여 국민계정 소득세 과세베이스와 한국경제 변화의 분포를 비교하며 각 분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⁵⁾ 1976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계정 소득세 과세베이스와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은 유사한 평균과 중위수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

4) 박형수 외(2012)는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국세통계 과세베이스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① 열거주의를 채택한 소득세의 특성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 ②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 ③ 과세관청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탈루 등의 소득, ④ 그 밖에 국세통계연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형수 외(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5) [그림 II-2]의 box는 각 변수의 상위 25%와 하위 25%를 제외한 중간 50%의 증가율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box 안의 횡선이 미디언(median)을 나타내고 box 상단(upper hinge)과 하단(lower hinge)은 각각 75 percentile의 값과 25percentile의 값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box의 길이는 3분위 상한과 2분위 하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분포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측정한다. whisker(box의 상하단과 인접한 상하한선 사이)은 75percentile과 25percentile 값의 1.5배 이내에 분포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이를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들은 점으로 표시된다.

이후 국민계정 소득세 과세베이스 증가율의 중위수는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중위수보다 소폭 낮게 나타났다.⁶⁾ 두 기간 모두에서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분포보다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증가율의 분포는 음(-)의 방향으로 다소 쏠린 모양을 보이며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증가율이 경기동행지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 소득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단위: %)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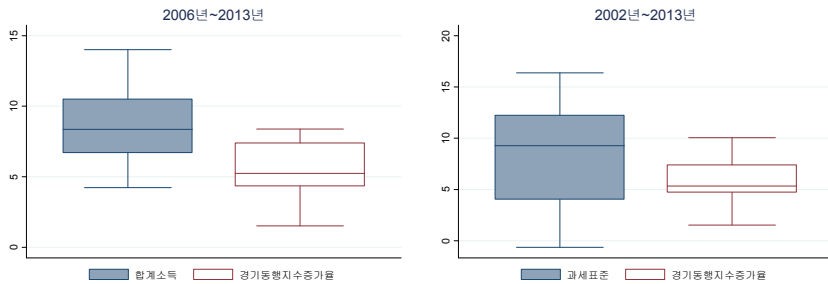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국민계정(2010년 기준)

2002년~2013년 기간 동안 소득세 국세통계 과세베이스와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분포를 살펴보면, 국세통계 과세베이스인 과세표준과 합계소득 증가율의 중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민계정 소득세 과세베이스의 중위수 값이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중위수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된다. 국세통계의 소득세 과세표준 증가율의 중위수와 합계소득 증가율

6) 경기동행지수 증가율들의 분포를 비교할 때, 경기동행지수가 실질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과세베이스 변수들을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하였다.

의 중위수는 거의 유사한 9.3%와 8.4% 수준으로 나타나서 2000년 이후 국민계정 소득세 과세베이스 증가율의 중위수 3.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국세통계 과세베이스들의 증가율 분포는 대체적으로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분포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합계소득의 증가율 분포에서는 3분위수가 크게 나타나 양(+)의 방향으로 쏠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3] 소득세 국세통계 과세베이스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단위: %)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경기국면별 증가율 및 탄성치 추이

경기순환국면을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하여 소득세의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탄성치를 구한 결과, 수축기와 확장기의 탄성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⁷⁾⁸⁾ 국민계정상 소득세 과세베이스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

7) 확장기와 수축기의 구분은 <표 II-1>과 [그림 II-1]에 나타나 있는 순환주기별 정점과 저점 시기를 기준으로 저점에서 정점으로 이행하는 기간은 확장기로 구분하고 반대 경우의 기간은 수축기로 구분했다. 이하 경기국면별 증가율 및 탄성치 추이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확장기와 수축기를 구분하여 적용했다.

8) <표 II-3>에 나타나 있는 2001~2010년 기간 수축기 평균 경상GDP 증가율이 7.2로 확장기 평균 증가율 7.1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8월을 정점으로 제7순환의 확장기가 종료되고 시작된 수축기는 2001.7월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다시 제8순환 확장기가 시작됐다. 2001년의 7개월이 수축기에 속했고 2001년 실질GDP 증가율은 4.5%로 확장기에 속한 연도들의 실질GDP 증가율보다 낮아서 2001년 전체를 수축기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물가요인에 의해 2001년 경상성장률이 8.3%로 높게

는 경상GDP가 1% 변화할 때 과세베이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전 기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국민계정의 소득세 과세베이스의 탄성치는 0.9인 반면 수축기의 탄성치는 1.0 수준으로 수축기에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상GDP와 국민계정상 소득세 과세베이스의 움직임이 거의 유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확장기의 과세베이스 탄성치가 0.7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수축기의 탄성치는 1.2 수준까지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국민계정의 소득세 과세베이스인 가계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임금 및 급여)는 상대적으로 경기 수축기에 증가율 둔화 또는 감소세가 경상GDP 증가율의 변화보다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 경기국면별 소득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단위: %)

	과세베이스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12.1	8.9	13.3	9.1	0.9	1.0
1981~1990년	18.6	15.5	19.1	15.2	1.0	1.0
1991~2000년	13.3	8.6	14.9	8.9	0.9	1.0
2001~2010년	5.5	5.9	7.1	7.2	0.8	0.8
2007~2014년	4.3	4.5	6.9	4.2	0.6	1.1
2008~2014년	4.7	4.5	6.5	4.2	0.7	1.1
2009~2014년	4.7	4.5	6.5	3.7	0.7	1.2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pp.77~78.

국세통계상의 소득세 과세베이스인 소득세 합계소득의 탄성치는 2006년~2013년 기간 중에 확장기 탄성치가 수축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타나면서 2010년까지의 수축기 평균 경상GDP 증가율이 높아졌다. 반면 2001년~2010년 기간의 확장기로 분류된 2005년, 2006년, 2009년의 경상GDP 증가율이 각각 5%, 5%, 4.3%로 낮게 나타나며 평균이 낮게 형성됐다.

최근 들어 그 격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⁹⁾ 2006년 이후 기간별로 확장기 탄성치는 1.8에서 1.5로 낮아진 반면 수축기의 합계소득 탄성치는 2.1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2009년~2013년의 기간 동안 2.4로 확대됐다. 소득세 합계소득의 경우 2006년 이후부터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추세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수축기와 확장기의 탄성치 격차가 커지는 추세는 국민계정의 소득세 과세베이스와 동일한 양상으로 판단된다. 이는 세계상의 요인에 기인하기보다는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3〉 경기국면별 소득세 합계소득과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단위: %)

	과세베이스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2006~2013년	11.6	9.0	6.5	4.3	1.8	2.1
2007~2013년	11.0	9.0	6.9	4.3	1.6	2.1
2008~2013년	9.9	9.0	6.5	4.3	1.5	2.1
2009~2013년	9.9	8.5	6.5	3.6	1.5	2.4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pp.77~78.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는 2002년~2013년 기간에는 확장기와 수축기의 차이가 미미한 반면, 2007년 이후에는 수축기의 과세표준 탄성치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확장기와 수축기의 탄성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확장기의 탄성치는 2007~2013년의 기간에 1.8을 보인 이후 소폭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2009년 이후 1.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축기의 과세표준 탄성치는 2009년 이후 2.9로 높아졌다.

국민계정의 소득세 과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로 보다 긴 기간을 대상으로 삼을 때는 확장기와 수축기의 탄성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

9) 2006년 이후로 분석할 경우 경기 수축기는 2008년, 2012년, 2013년으로 3개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이전 기간의 수축기 과세표준 증가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수축기 과세표준 탄성치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소득세수의 확대를 초래하며 수축기의 경기변동을 보다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표 II-4〉 경기국면별 소득세 과세표준과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단위: %)

	과세베이스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2002~2013년	11.7	8.9	6.9	5.5	1.7	1.6
2007~2013년	12.4	8.9	6.9	4.3	1.8	2.1
2008~2013년	10.6	8.9	6.5	4.3	1.6	2.1
2009~2013년	10.6	10.2	6.5	3.6	1.6	2.9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pp.77~78.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법인세 과세베이스

법인세 과세베이스의 경우에도 소득세처럼 국민계정상의 과세베이스와 국세통계연보상의 과세베이스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통계연보상의 과세베이스는 후자법인소득과 과세표준이 있다. 후자법인소득은 법인의 세전 당기순이익에 순지급이자 및 토지에 대한 순지급 임료 등을 차감하고 해외소득을 합산한 후 세무조정을 통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의 법인소득 사이의 차이를 조정한 결과이다.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및 비과세 소득 등의 공제 후 산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지표가 과세표준이다.¹⁰⁾

10)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작성되며, 98% 이상의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신고현황의 실제 귀속연도는 신고연도의 전년도에 해당한다. 국세통계의 후자법인소득 및 과세표준은 신고연도가 아닌 귀속연도로 조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흑자법인소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민계정상의 법인세 과세 베이스는 법인부문 영업잉여이다.¹¹⁾ 국민계정상 법인세 과세베이스인 법인부문의 영업잉여는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총부가가치 중 법인부문에 귀속되는 부분이다. 국민계정상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와 국제통계상의 과세베이스인 흑자법인 사업소득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자기업의 음(-)의 영업잉여를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국민계정상의 법인부문 영업잉여는 적자기업의 음(-)의 영업잉여를 포괄하고 있는 반면 국제통계연보상의 흑자법인 사업소득은 적자기업의 음(-)의 세전 당기순손실을 반영하지 않는다.¹²⁾

1) 증가율 분포 비교

1981~2013년 기간 중 국민계정상 법인세 과세베이스인 법인부문 영업잉여의 증가율 분포는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분포보다 넓게 퍼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부문 영업잉여의 변동이 전체 경제의 변동보다 더 컸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법인부문 영업잉여 증가율의 변동성은 전체 기간의 변동성보다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경기동행지수의 변동성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계정상의 과세베이스의 변동성이 큰 것은 법인세수의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인 법인부문 영업잉여 증가율의 중위수가 경기동행지수 중위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00년 이후의 기간에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법인부문 영업잉여 증

11) 박형수 외(2012), pp.122~124.

12) 박형수 외(2012)는 국민계정상의 법인부문 영업잉여와 국제통계 베이스인 흑자법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국민계정의 법인영업잉여는 흑자법인의 양(+)의 영업잉여에서 적자법인의 음(-)의 영업잉여를 상쇄한 결과이다. 둘째, 법인영업잉여는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뿐만 아니라 순지급 이자 및 토지에 대한 순지급 임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제통계의 흑자법인소득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제외된다. 셋째, 국민계정의 법인영업잉여는 국경 내로 제한되지만 흑자법인소득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한다. 넷째, 국제통계 베이스인 흑자법인소득은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거친 결과이다. 국민계정상의 과세베이스와 국제통계상의 과세베이스의 차이와 법인세 계산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계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올의 중위수는 2.8% 수준으로 전 기간 중위수인 10.7%보다 크게 낮아졌으나 전 기간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중위수와 2000년 이후 중위수는 각각 6.7%와 5.6%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부문 영업잉여의 변동성이 우리 경제 전체의 변동성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수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4] 법인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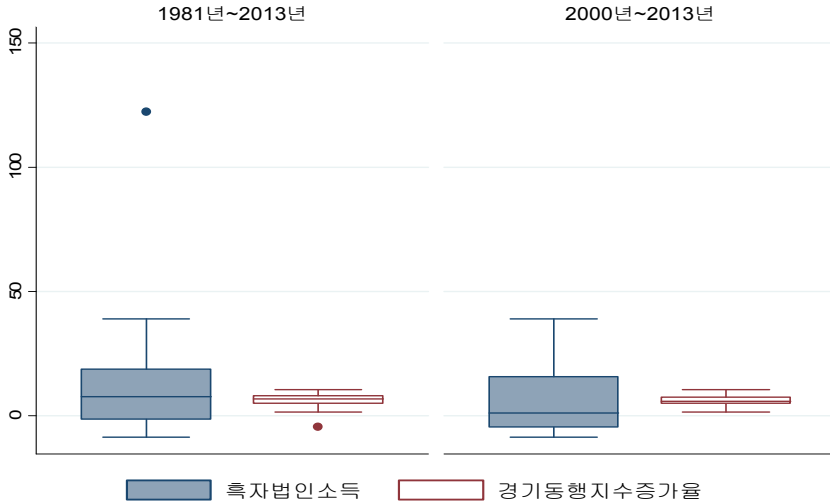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국민계정(2010년 기준)

국세통계상 법인세 과세베이스인 흑자법인소득의 증가율 분포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1~2013년 기간 중 흑자법인소득 증가율 중위수는 7.7%이고 1982~2013년 기간 과세표준 증가율 중위수는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계정상 법인세 과세베이스인 법인부문 영업잉여 증가율이 2000년 이후 둔화된 것과 같이 흑자법인소득과 과세표준의 2000년 이후 증가율의 중위수는 각각 1.2%와 3.7%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국세통계 법인세 과세베이스 분포는 전반적으로 경기동행지수의 분포보다 양(+의 방향으로) 쏠린 양상을

[그림 II-5] 법인세 흑자법인소득과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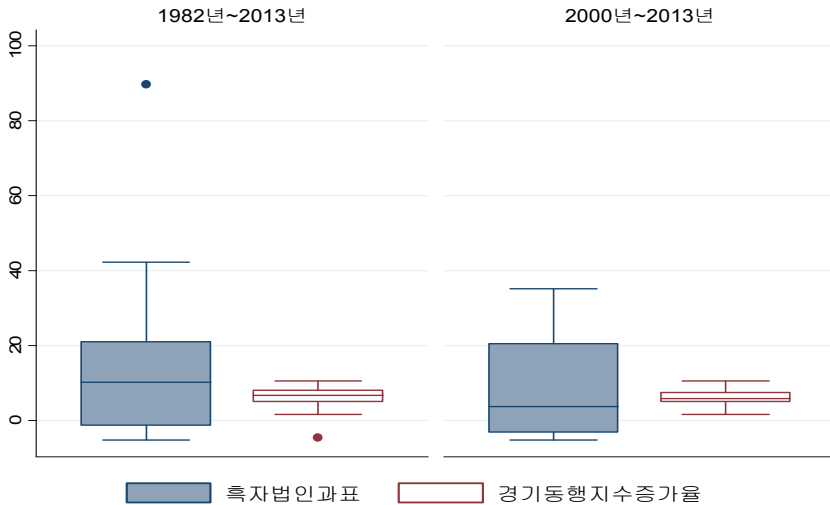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6] 법인세 과세표준과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단위: %)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보이고 있으며 국세통계상 과세베이스의 변동성이 국민계정상 법인세 과세베이스의 변동성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2) 경기국면별 증가율 및 탄성치 추이

경기순환국면별 법인부문영업잉여 탄성치를 살펴보면, 대체로 경기 확장국면의 법인영업잉여 탄성치가 수축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 기간 확장기 과세베이스 증가율은 평균 15.9% 수준이나 수축기 증가율은 평균 7.3%로 크게 위축된 반면 경상GDP 증가율은 수축기 평균 9.1%로 확장기 평균 13.3%보다 상대적으로 덜 둔화된 것에 기인하여 수축기의 법인부문 영업잉여 탄성치가 0.8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2007년 이후 수축기의 법인부문 영업잉여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는 0.1 수준에 불과하여 확장기의 2 내외의 탄성치 수준과 매우 대조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법인부문 영업잉여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도 경기 확장기에 법인부문 영업잉여 증가율은 법인세수 호조로 연계되는 반면 경기 수축기에는 법인세수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하는 근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5〉 경기국면별 법인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단위: %)

	과세베이스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15.9	7.3	13.3	9.1	1.2	0.8
1981~1990년	16.9	15.6	19.1	15.2	0.9	1.0
1991~2000년	20.5	3.1	14.9	8.9	1.4	0.3
2001~2010년	12.3	8.3	7.1	7.2	1.7	1.2
2007~2014년	14.9	0.6	6.9	4.2	2.2	0.1
2008~2014년	12.0	0.6	6.5	4.2	1.9	0.1
2009~2014년	12.0	0.5	6.5	3.7	1.9	0.1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pp.77~78.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경기국면별 흑자법인소득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도 법인부문 영업잉여와 마찬가지로 확장기의 경우에 수축기보다 크게 나타난다. 2007년 이후 수축기 흑자법인소득의 탄성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2012년~2013년의 경기 수축기에 흑자법인소득이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경기 확장기의 흑자법인소득 탄성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축기의 흑자법인 소득탄성치는 기간별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7년 이후 -0.5~0.7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축기 흑자법인소득의 증가율이 -2.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인 법인부문 영업잉여의 증가율이 0.6% 수준인 것은 적자법인들의 적자규모가 축소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2007년 이후 수축기에 적자법인들의 적자규모 확대는 둔화됐으나 흑자법인들의 소득 증가세가 크게 둔화 내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세수 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6〉 경기국면별 법인세 흑자법인소득과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단위: %)

	과세베이스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24.6	8.7	13.3	9.4	1.9	0.9
1981~1990년	31.3	17.7	19.1	15.2	1.6	1.2
1991~2000년	29.8	5.7	14.9	8.9	2.0	0.6
2001~2010년	16.6	8.4	7.1	7.2	2.3	1.2
2007~2013년	11.9	-2.2	6.9	4.3	1.7	-0.5
2008~2013년	9.9	-2.2	6.5	4.3	1.5	-0.5
2009~2013년	9.9	-2.3	6.5	3.6	1.5	-0.7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pp.77~78.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흑자법인 과세표준의 경우에도 확장기 탄성치가 수축기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앞에서 살펴본 다른 과세베이스들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흑자법인 사업소득과 같이 2007년 이후 경기 수축기의 흑자법인 과세표준 탄성치도 음(-)의 값을 갖는데, 이월결손금공제 등이 반영된 과세표준 증가율은 흑자법인 사업소득 감소율보다 더 큰 3.3~3.9% 수준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축기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탄성치는 -0.8~-1.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과세표준과 흑자법인소득의 수축기 탄성치가 음(-)의 값을 갖고 확장기에는 경상GDP 대비 높은 탄성치를 보이는 것은 법인세제가 경기안정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후에 진행되었으나 확장기에 높은 과세표준 및 흑자법인소득 탄성치는 높은 법인세수로 귀결되며 경기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수축기의 음(-)의 탄성치는 법인세수의 축소를 통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7〉 경기국면별 법인세 흑자법인 과세표준과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단위: %)

	과세베이스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24.3	7.9	12.6	9.4	1.9	0.8
1982~1990년	31.3	17.2	17.9	15.2	1.7	1.1
1991~2000년	28.4	3.0	14.9	8.9	1.9	0.3
2001~2010년	17.5	9.4	7.1	7.2	2.5	1.3
2007~2013년	14.1	-3.3	6.9	4.3	2.0	-0.8
2008~2013년	11.1	-3.3	6.5	4.3	1.7	-0.8
2009~2013년	11.1	-3.9	6.5	3.6	1.7	-1.1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pp.77~78.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국민계정 과세베이스는 국내 최종소비 전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관측하는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은 부가가치세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에서 부가가치세수를 제외한 부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이다.¹³⁾ GDP의 지출 구성항목 중에서 최종 소비지출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로 남는 것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며 중간재로 투입되는 투자항목은 공제되기 때문이다.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은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부문의 확대와 함께 정부소비지출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소비지출의 77% 정도는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국세통계 과세베이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의 합에서 매입세액 과세표준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한다.¹⁴⁾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과세표준은 매출분 과세표준의 합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단계의 거래 특성상 매출분 과세표준의 합계는 실제 과세대상 매출 과세표준을 중복계산하기 때문에 매입분 과세표준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세통계 과세베이스라 정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유형별 과세표준 통계자료는 2005년부터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되고 있어서 시계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부가가치세 국세통계 과세베이스는 2008~2009년 15%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하였으나 2014년 2.7%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증가율 분포 비교

부가가치세제가 최초로 도입된 1977년 이후 2014년까지의 기간 중 부가가치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인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의 분포는 우리나라 경기 변동의 분포와 흡사하나 분포의 크기는 다소 작게 나타난다. 일부 음(-)

13) 한국은행(201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p.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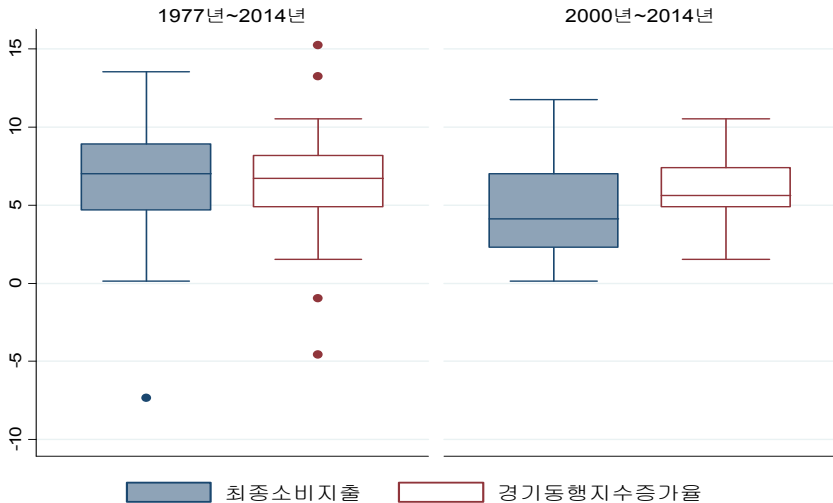
14) 면세분 매출의 수입금액은 소득세의 비과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며 매입세액 공제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제외하였다.

의 방향으로 치우친 이상치가 관측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분포의 크기보다 작다. 같은 기간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의 중위수는 6.7%이고 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 중위수는 7.0%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전체 기간의 분포와 달리 변동성은 모두 축소되어 증가율 분포의 크기가 전체 기간의 분포보다 축소됐으나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의 중위수가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중위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기간의 분포에서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분포보다 크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이러한 양상의 정도는 축소됐으나 여전히 최종소비지출의 변동성이 우리 경제 전체의 변동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통계자료가 가용한 2006~2014년의 최근 기간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이상치를 포함하는 경우 국세통계 과세베이스인

[그림 II-7] 부가가치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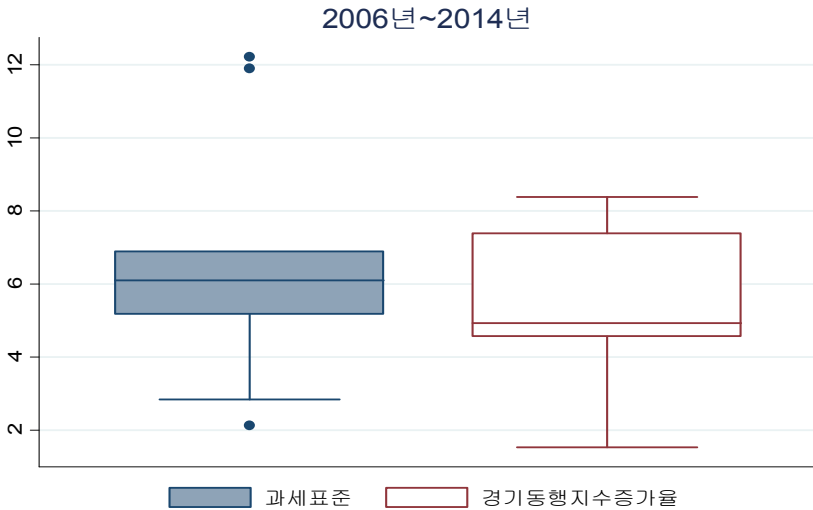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국민계정(2010년 기준)

과세표준 증가율의 분포가 경기 변동의 분포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이상치를 제외할 경우 한국 경제의 변동성보다 국세통계 과세표준의 변동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증가율 분포의 중위수를 비교하면,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중위수가 4.9% 수준이며 과세표준 증가율의 중위수가 6.1%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인 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의 중위수는 3.7%로 여타 지표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단위: %)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경기국면별 증가율 및 탄성치 추이

부가가치세의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탄성치는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의 최종소비지출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는 1 내외로 매우 단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별 탄성치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의 탄성치도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경기순환국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는 달리 다소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순환국면별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의 탄성치는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경기조절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부가가치세제 도입 이후 세율의 변화 없이 과세대상 품목군 정도를 조정해 오고 있어서 부가가치세수의 경기국면별 탄성치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8〉 경기국면별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와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단위: %)

	과세베이스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12.6	8.9	13.3	9.1	0.9	1.0
1981~1990년	15.7	14.3	19.1	15.2	0.8	0.9
1991~2000년	15.9	9.5	14.9	8.9	1.1	1.1
2001~2010년	7.1	5.4	7.1	7.2	1.0	0.8
2007~2014년	6.0	4.4	6.9	4.2	0.9	1.0
2008~2014년	5.5	4.4	6.5	4.2	0.9	1.0
2009~2014년	5.5	3.5	6.5	3.7	0.9	1.0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pp.77~78.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9〉 경기국면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경상GDP 추이 및 탄성치

(단위: %)

	과세베이스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2006~2014년	6.2	4.4	9.5	7.0	0.7	0.6
2007~2014년	6.0	4.4	10.2	7.0	0.6	0.6
2008~2014년	5.5	4.4	10.5	7.0	0.5	0.6
2009~2014년	5.5	3.5	10.5	4.2	0.5	0.8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pp.77~78.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10월 12일 접속)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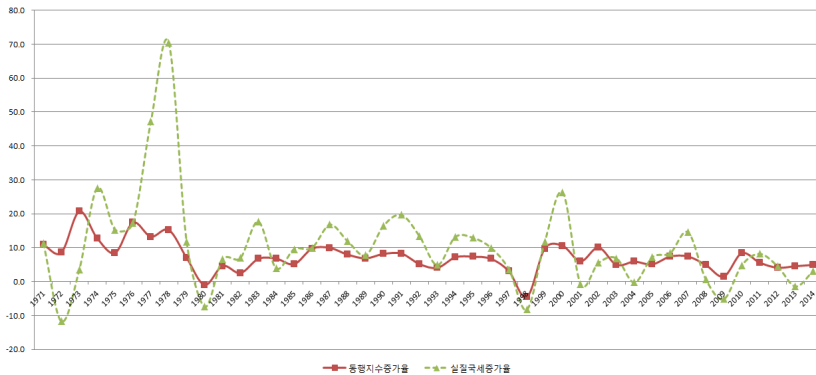
가. 총국세

1) 증가율 분포 비교

1970년 이후 경기변동과 국세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71~1973년, 1980~1981년, 1984년, 1998~1999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2000년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국세 증가율이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을 상회하고 국세의 변동폭도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¹⁵⁾ 2000년 이후의 경우 국세의 변동폭은 여전히 경기동행지수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보이나 이전의 기간과는 달리 국세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경기동행지수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2000년, 2007년, 2011년의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이 동행지수 증가율을 상회하고 이외의 연도에서는 대체적으로 같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8] 우리나라 경기변동과 국세수입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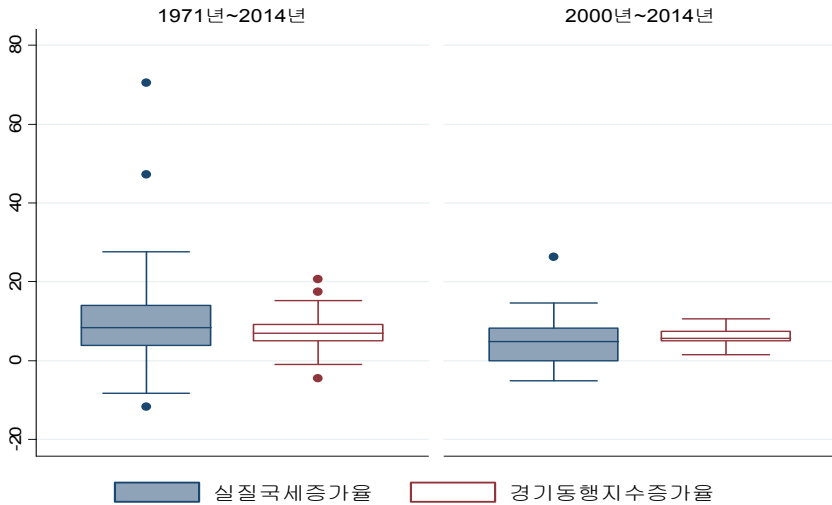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경기종합지수(8차)(<http://www.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동행종합지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GDP 디플레이터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세수입실적

15) 경기동행지수는 실질변수이므로 국세 증가율을 경기동행지수 증가율과 비교할 수 있도록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국세수입변수들을 실질변수로 전환했다.

1971년 이후 국세수입과 한국경제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세수입이 한국경제의 경기 변화보다 소폭 높은 증가율과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II-10]는 box plot을 이용하여 국세수입과 한국경제 변화의 분포를 비교하며 각 분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971~2014년 기간 동안 실질국세 증가율과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2분위와 3분위 분포는 중위값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두 변수의 미디언 값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는 양(+)의 방향으로 쏠린 모양을 보이며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기와 국세수입이 추세적으로 성장추이를 보여 왔음을 시사한다.

[그림 II-10] 국세수입과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단위: %)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GDP 디플레이터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세수입실적

2000년 이후 두 변수의 분포는 전체 기간의 분포보다 낮은 수준의 중위수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분위와 3분위의 분포가 중위수와

를 중심으로 대칭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국세수입의 변동성이 경기동행지수의 변동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국세 증가율은 2분위와 3분위의 분포가 미디언 값을 중심으로 2분위의 분포가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은 3분위의 분포가 다소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국세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한국경제의 변동성보다 소폭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전체 기간 분포에서 관측된 양(+)의 방향으로 쏠려있는 모양이 크게 완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국세수입과 경기 변동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음을 시사하며 국세수입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관측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2) 경기국면별 증가율 및 탄성치 추이

총국세수입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를 경기순환국면의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 증가율의 경기국면별 차이에 기인하여 확장기의 세수탄성치가 수축기보다 크게 측정됐으며 1970년 이후 세수탄성치의 크기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세수탄성치는 국세수입이 경상GDP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세 증가율/경상GDP 증가율로 측정된다. 경기국면별로 국세수입의 탄성치는 해당 경기국면에 속하는 연도들의 국세 증가율과 경상GDP 증가율의 평균값을 구하고 각 평균값들을 이용하여 경기국면별 세수탄성치를 계산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는 기간별 국세수입 및 경상GDP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확장기와 수축기의 증가율 차이는 국세수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16) 엄밀한 의미의 세수탄성치는 세계의 변화에 따른 두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후 경상GDP 증가율에 대한 국세 증가율의 비율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매해 수행된 세계의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 및 경상GDP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엄밀한 의미의 세수탄성치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세계개편에 따른 세수효과의 측정 과정에는 대부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전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해 세수효과 추정 오차가 상당히 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제하에 측정된 세계개편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엄밀한 의미의 세수탄성치를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나서 경기순환국면별 세수탄성치의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 GDP 증가율의 경우 확장기와 수축기의 차이가 1970년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관측되기 시작한다. 국세수입 증가율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확장기와 수축기에 따라 평균 증가율에 큰 차이가 관측된다. 이러한 경기국면별 국세 증가율의 차이에 따른 세수탄성치의 차이는 예상하지 못한 경기 악화에 의해 정부의 국세수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세제가 경기 자동안정화 장치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세제가 일정 부분 경기자동조절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2007년 이후 확장기와 수축기의 세수탄성치 사이의 차이가 축소되면서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후 보다 정량적 분석을 통해 세목별 및 연도별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의 추이와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는 경기국면별 세수탄성치의 변화 추이를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I-10〉 경기순환국면별 국세수입과 경상GDP 추이 및 세수탄성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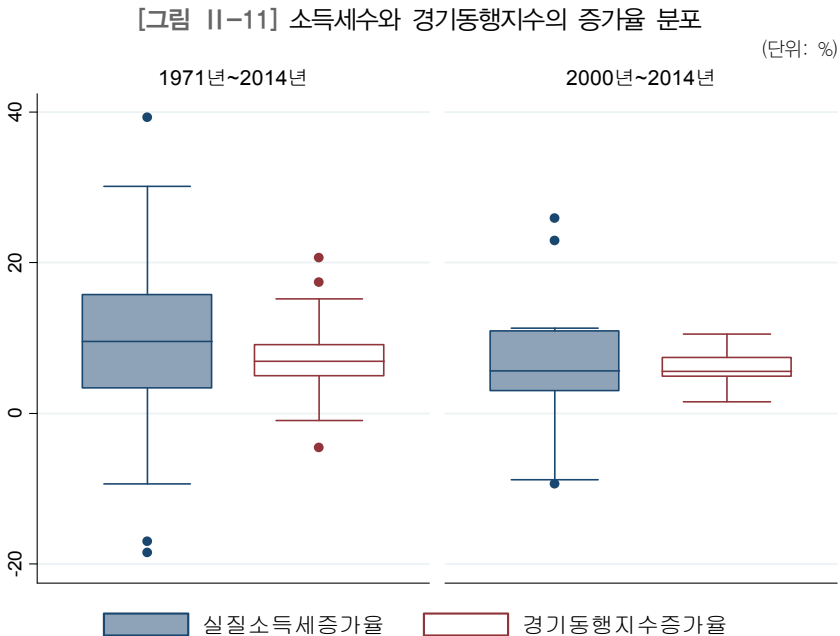
	국세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세수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21.4	14.5	16.9	14.3	1.3	1.0
1971~1980	42.6	33.4	30.9	30.1	1.4	1.1
1981~1990	20.4	13.7	19.1	15.2	1.1	0.9
1991~2000	19.9	9.9	14.9	8.9	1.3	1.1
2001~2010	8.1	4.9	7.1	7.2	1.1	0.7
2007~2014	8.3	3.1	6.9	4.2	1.2	0.7
2008~2014	5.4	3.1	6.5	4.2	0.8	0.7
2009~2014	5.4	2.9	6.5	3.7	0.8	0.8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중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세수입실적

나. 소득세수

1) 증가율 분포 비교

전체 기간 소득세 수입과 한국경제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세 수입이 한국경제의 경기 변화보다 소폭 높은 증가율과 보다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1~2014년 기간 동안 실질 소득세수 증가율과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2분위와 3분위 분포는 중위값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두 변수의 중위수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는 양(+)의 방향으로 쏠린 모습을 보이며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기와 소득세 수입이 추세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시사한다.



-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총합지수(8차) 동행총합지수 월별 자료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GDP 디플레이터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세수입실적

2000년 이후 두 변수의 분포는 전체 기간의 분포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중위수를 보이지만 변동성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세 수입의 변동성이 경기동행지수의 변동성보다 크며 2분위와 3분위의 분포가 중위수를 중심으로 대칭적이지 않다.

2) 경기국면별 증가율 및 탄성치 추이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소득세 수입 증가율의 경기국면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확장기의 세수탄성치가 수축기보다 낮은 것으로 측정됐으며 1970년 이후 세수탄성치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는 기간별 소득세수입 및 경상GDP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까지 확장기와 수축기의 증가율 차이는 경상GDP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경기순환국면별 세수탄성치의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별 소득세수 평균 증가율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확장기와 수축기에 따라 평균 증가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경기국면별 소득세수 증가율에 차이가 관측된다.

〈표 II-11〉 경기국면별 소득세수입과 경상GDP 추이 및 세수탄성치

(단위: %)

	소득세수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소득세수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17.8	15.0	16.9	14.3	1.05	1.05
1971~1980	23.8	24.0	30.9	30.1	0.77	0.80
1981~1990	22.4	21.5	19.1	15.2	1.17	1.42
1991~2000	16.3	12.2	14.9	8.9	1.09	1.37
2001~2010	10.4	5.3	7.1	7.2	1.46	0.75
2007~2014	10.4	4.4	6.9	4.2	1.52	1.05
2008~2014	5.5	4.4	6.5	4.2	0.84	1.05
2009~2014	5.5	8.1	6.5	3.7	0.84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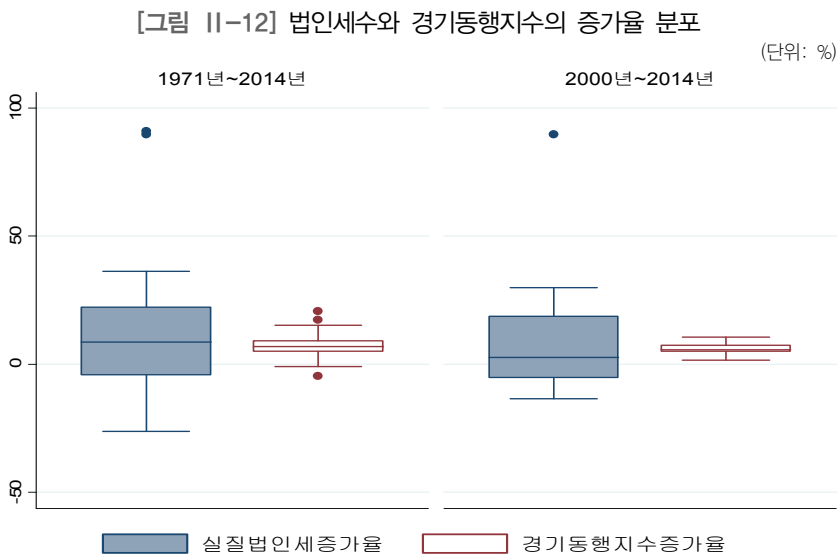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세수입실적

이처럼 수축기의 소득세수 증가율이 확장기의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까지 수축기의 소득세수탄성치가 대부분의 기간에서 더 높게 나타나서 소득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수의 수축기 탄성치가 확장기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법인세수

1) 증가율 분포 비교

1971년 이후 법인세 수입과 한국경제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법인세수가 한국경제의 경기 변화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총국세와 소득세수에서도 관측되어진다. 1971~2014년 기간 동안 실질법인세 증가율과 경기동행지수의



-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GDP 디플레이터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세수입실적

중위수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법인세수 분포는 양(+)의 방향으로 쏠린 모양을 보이며 1970년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수가 추세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시사한다.

2000년 이후 법인세수의 분포는 전체 기간의 분포보다 낮은 수준의 중위수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전히 법인세수의 변동성이 경기동행지수의 변동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법인세수 증가율은 2분위와 3분위의 분포가 중위수를 중심으로 대칭적이지 않고 3분위의 분포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3분위 분포가 다소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법인세수 증가율의 3분위 분포보다 훨씬 좁게 나타난다.

2) 경기국면별 증가율 및 탄성치 추이

법인세수탄성치를 경기순환국면의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하여 측정할 결과에 따르면, 수축기의 세수탄성치가 확장기보다 대체로 크게 나타나서 수축기에서 법인세의 경기조절 기능이 미약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수축기의 법인세수 증가율이 확장기보다 크게 축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는 기간별 법인세수입 및 경상GDP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확장기의 법인세수 증가율이 수축기의 증가율보다 크게 둔화되며 수축기 법인세수탄성치가 확장기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세수탄성치 측면에서 거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1990년대 이후 일정 부분 경기자동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2001~2010년 기간 동안 확장기와 수축기의 세수탄성치 사이의 차이가 축소되면서 법인세의 경기조절 기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법인세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09년 이후 수축기에 법인세수탄성치가 음(-)의 값을 가지며 법인세수 감소를 통해 경기조절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12〉 경기국면별 법인세수입과 경상GDP 추이 및 세수탄성치

(단위: %)

	법인세수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법인세수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19.0	19.7	16.9	14.3	1.1	1.4
1971~1980	21.7	41.9	30.9	30.1	0.7	1.4
1981~1990	19.2	25.2	19.1	15.2	1.0	1.7
1991~2000	27.0	13.2	14.9	8.9	1.8	1.5
2001~2010	8.2	8.7	7.1	7.2	1.1	1.2
2007~2014	9.2	1.4	6.9	4.2	1.3	0.3
2008~2014	5.4	1.4	6.5	4.2	0.8	0.3
2009~2014	5.4	-1.6	6.5	3.7	0.8	-0.4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제수입실적

라. 부가가치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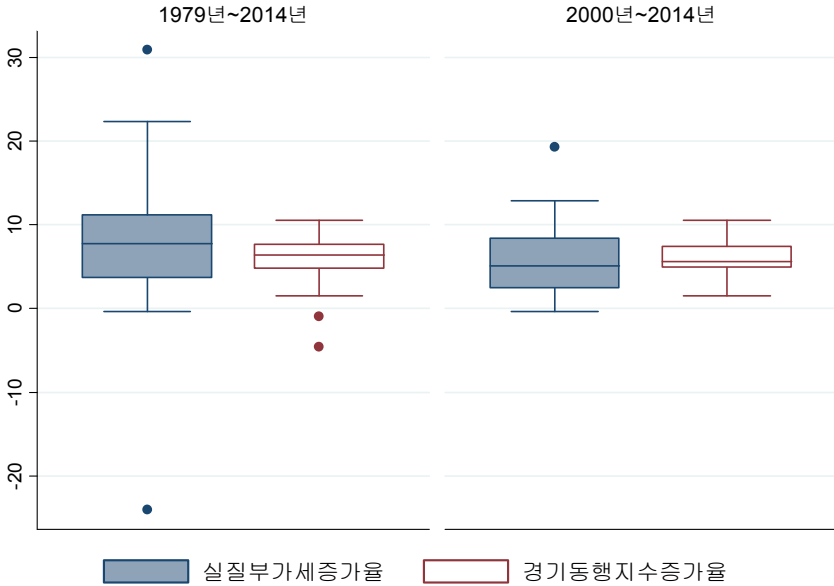
1) 증가율 분포 비교

총국세수입 및 여타 주요 세목들과 같이, 1977년 이후 부가가치세 수입과 한국경제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유사한 증가율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수입이 한국의 경기 변화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2014년 기간 동안 실질부가가치세수 증가율과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중위수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여타 세목들보다 변동성이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수 분포는 양(+)의 방향으로 쏠린 모양을 보이며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기와 부가가치세수가 추세적으로 성장했음을 시사한다.

2000년 이후 부가가치세수의 분포는 전체 기간의 분포보다 크게 축소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2분위와 3분위의 분포가 중위수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기간의 부가가치세수 증가율 중위수가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중위수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소폭 낮게 나타나며 부가가치세수 증가세의 둔화가 관측되어진다.

[그림 II-13] 부가가치세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단위: %)



-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GDP 디플레이터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세수입실적

2) 경기국면별 증가율 및 탄성치 추이

부가가치세수탄성치는 대체로 확장기에 더욱 높게 나타났으나 2007년 이후 수축기의 탄성치가 확장기보다 높게 나타나며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는 기간별 부가가치세 수입 및 경상GDP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확장기와 수축기의 증가율 차이는 부가가치세수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경기순환국면별 부가가치세 세수탄성치의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기국면별 부가가치세수 증가율의 차이에 따른 세수탄성치의 차이는 2007년 이후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2000년 이후의 부가가치세 증가율 분포가 크게 축소되고 중위수 역시 낮아진 것과 같은 양상으로 이해된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봤을 때, 수축기의 경상GDP 1% 증가에 대해 확장기보다 낮은 세수 증가율이 관측되면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일정 부분 경기자동조절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확장기와 수축기의 세수탄성치 크기가 뒤바뀌면서 수축기에 세수가 더 확대되고 확장기에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며 경기 조절기능보다는 해당 경기 국면을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경기국면별 부가가치세수입과 경상GDP 추이 및 세수탄성치

(단위: %)

	부가가치세수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부가가치세수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26.4	11.6	14.4	11.0	1.84	1.05
1977~1980	245.7	32.7	35.1	25.6	7.00	1.28
1981~1990	19.6	13.3	19.1	15.2	1.03	0.88
1991~2000	17.0	8.4	14.9	8.9	1.14	0.94
2001~2010	8.6	6.9	7.1	7.2	1.20	0.96
2007~2014	7.6	5.9	6.9	4.2	1.11	1.41
2008~2014	7.7	5.9	6.5	4.2	1.18	1.41
2009~2014	7.7	5.6	6.5	3.7	1.18	1.52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세수입실적

마. 그 밖의 기타 세수

1) 증가율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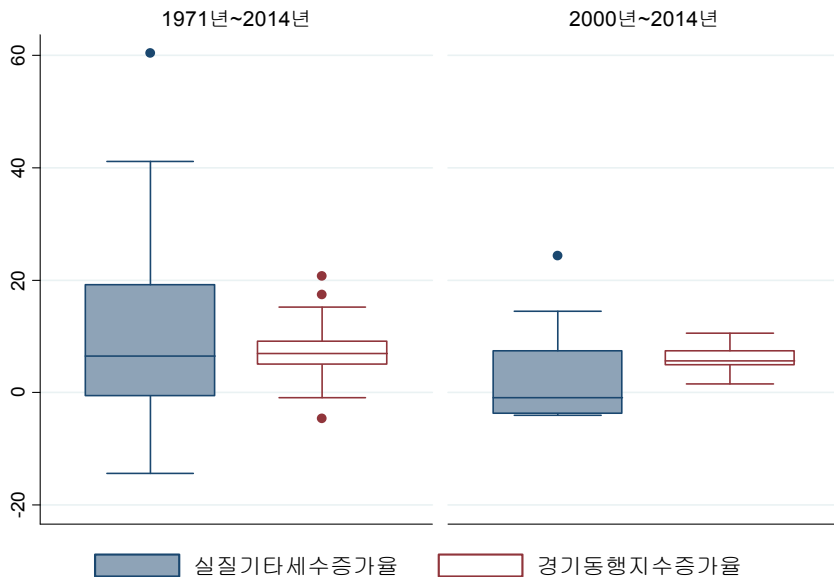
총국세수입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들의 세수 증가율 분포를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분포와 기간별로 비교하여 살펴본다. 전체 기간과 2000년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 기타 세수의 변동성이 한국경제 전체의 변동성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점은 여타 세목의 세수 및 총국세수입 증가율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2000년 이후 기간

의 기타 세수의 변동성은 전체 기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앞에서 살펴본 여타 세목 및 총국세수입의 변동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기타 세수 증가율의 중위수가 전체 기간의 경우보다 크게 낮아지며 기타 세수의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포상의 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관세로 판단된다. 과거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수입의 증가와 함께 관세수입의 괄목할 만한 신장세가 관측되었으나 FTA 진행 및 관세율 인하 등의 자유무역 확대에 따라 관세수입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됐다. 관세 이외에도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도입된 세제가 정착되면서 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과거 추이와는 달리 경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경제발전 초기에 다양한 세제들이 새로

[그림 II-14] 기타 세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증가율 분포

(단위: %)



-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 자료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GDP 디스플레이터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세수입실적

이 도입되어 기타 세수 합계의 증가세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기존 국세 세목들의 신설은 찾아보기 어렵다.¹⁷⁾

2) 경기국면별 증가율 추이

경기국면별로 기타 세수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를 살펴보면, 기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확장기의 세수탄성치가 수축기의 세수탄성치보다 크게 나타나서 일정 부분 기타 세수가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기국면별 세수탄성치의 차이는 경기국면별 기타 세수 증가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9년 이후 기타 세수의 수축기 평균 증가율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제10순환주기의 수축기 동안 기타 세수의 감소가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표 II-14〉 경기국면별 기타 세수입과 경상GDP 추이 및 세수탄성치

(단위: %)

	기타 세수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기타 세수탄성치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21.6	12.1	16.9	14.3	1.3	0.8
1971~1980	41.8	35.0	30.9	30.1	1.4	1.2
1981~1990	21.4	6.9	19.1	15.2	1.1	0.5
1991~2000	23.7	8.6	14.9	8.9	1.6	1.0
2001~2010	6.8	1.7	7.1	7.2	0.9	0.2
2007~2014	7.0	0.6	6.9	4.2	1.0	0.1
2008~2014	3.8	0.6	6.5	4.2	0.6	0.1
2009~2014	3.8	-0.5	6.5	3.7	0.6	-0.1

자료: 1.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3. 기획재정부, 협조자료, 국세수입실적

17)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1977년에 도입되었다. 증권거래세는 1979년 도입되었으며 교육세는 1985년, 교통세와 농특세는 1994년에 도입되었다. 이후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없었으며, 2015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담배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세수가 예상된다.

4. 과세베이스 및 세수 변동성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세목의 과세베이스 및 세수 증가율이 보이는 분포의 특성 및 경기국면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세수의 변동성은 전 기간 경기동행지수의 변동성보다 크지만 2000년 이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세 국세통계 과세베이스를 포함하여 여전히 과세베이스 및 세수 증가율 분포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분포보다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소득세의 국민계정 과세베이스로서 소득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증가율의 분포는 2000년 이후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분포보다 좁게 나타나며 그 변동성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또한 각 변수들의 증가율 분포의 중위수는 전 기간 대비 2000년 이후 낮아졌고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중위수와 비교해서도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과세베이스 및 세수의 증가율이 과거보다 둔화되면서 세수탄성치가 둔화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둘째, 경기국면별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축기에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의 경우에만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및 국세통계 과세베이스 모두 수축기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2007년 이후의 기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축기의 과세베이스 탄성치가 더 크다는 것은 동일한 세율이 유지된다면 수축기의 세부담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세제가 수축기의 경기 침체를 더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3대 기간 세목 중에서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만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법인세의 국세통계 과세베이스인 흑자법인소득과 과세표준은 2007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음(-)의 수축기 탄성치를 보이며

18) 2000년 이전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국세통계 과세베이스는 가용하지 않아서 이러한 추이를 확인할 수 없다.

최근 법인세수 감소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으며 법인세 경기조절 효과의 근원임을 시사한다.

셋째, 주요 세목의 경상GDP 대비 경기국면별 세수탄성치는 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수축기 세수탄성치가 확장기 세수탄성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2007년 이후의 경우 법인세의 수축기 세수탄성치만 확장기 세수탄성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우 전 기간 세수탄성치는 경기국면과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이나 2000~2010년의 기간에만 수축기의 세수탄성치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 기간 및 2010년까지의 기간별 세수탄성치는 수축기에 낮게 나타나며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이후 세분된 기간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며 수축기의 경기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5〉 주요 세목의 과세베이스 및 세수의 분포 특성 및 경기국면별 특징

세목	변수	경기동행지수 대비 변동성		경상GDP 대비 탄성치	
		전기간	2000년 이후	전기간	2007년 이후
소득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 넓게 분포(특히, 하위 50% 넓게 분포) - 중위수 유사	크게 축소 - 다소 좁게 분포 - 중위수 낮음	- 수축기에 소폭 높거나 유사한 수준	- 수축기에 높음
	국세통계 과세베이스 (합계소득, 과세표준)		- 넓게 분포 - 중위수 높음		- 수축기에 높음 - 2007년 이후 더욱 두드러짐
	세수	- 넓게 분포 - 중위수 소폭 높음	- 크게 축소 - 여전히 넓게 분포 - 중위수 유사	- 유사 - 2000~2010년 기간에만 확장기에 높음	- 2008년 이후 수축기에 높음
법인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 넓게 분포 - 중위수 높음	- 크게 축소 - 여전히 넓게 분포 - 중위수 낮음	- 수축기에 낮음	- 수축기에 매우 낮음
	국세통계 과세베이스 (흑자법인소득, 과세표준)	- 넓게 분포 - 중위수 소폭 높음	- 다소 축소 - 여전히 넓게 분포 - 중위수 낮음	- 수축기에 낮음	- 수축기에 매우 낮음 - 2007년 이후 더욱 두드러짐
	세수	- 넓게 분포 - 중위수 소폭 높음	- 크게 축소 - 여전히 넓게 분포 - 중위수 낮음	- 수축기에 높음 - 1990년대 확장기에만 높음	- 수축기에 낮음 - 2009~2014년 음(-)의 탄성치
부가가치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 다소 넓게 분포 - 중위수 소폭 높음	- 다소 축소 - 여전히 넓게 분포 - 중위수 낮음	- 수축기에 소폭 높거나 유사한 수준	- 수축기에 소폭 높거나 유사한 수준
	국세통계 과세베이스 (과세표준)		- 좁게 분포 (이상치 제외시) - 중위수 소폭 높음		- 수축기에 소폭 높거나 유사한 수준 - 2009년 이후 수축기에 높음
	세수	- 넓게 분포 - 중위수 소폭 높음	- 다소 축소 - 여전히 넓게 분포 - 중위수 낮음	- 수축기에 낮음	- 수축기에 높음

자료: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저자 작성

Ⅲ.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실증분석

1. 분석방법

가. 기존 연구

정부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의 변화 없이 경제 시스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기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재정지출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재정여건이 악화된 시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경기순환국면별로 조세정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문헌상 찾아볼 수 있는 초기의 재정정책 자동안정화 기능에 대한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파악되며 당시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Musgrave and Miller(1948), Musgrave(1959), Eilbott(1966) 등이 있다.

Musgrave and Miller(1948)은 1947~1948년 동안 자동안정화 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케인즈의 승수모형으로부터 유도한 자동안정화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조세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측정하는 지수는 외부의 경제충격에 의해 발생한 소득 변화분을 조세제도가 있는 경제와 조세제도가 없는 경제에 대해 승수모형으로부터 도출하고 조세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의 효과는 세제에 의해 축소된 경제충격에 따른 소득 변화분의 비율로 측정하고 있다.¹⁹⁾ Musgrave(1959)는 Musgrave and

19) 이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합한 세수의 공통적인 한계세율, 평균세율, 소득탄력성 등을 이용하여 안정화 지수공식을 도출하고 있다. 이들이 정의한 조세의 경기 안정화 지수 $\alpha = crE/(1-c+crE)$ 이다. 여기서 c 는 가계의 가치분소득과 법인의 유보이익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r 은 소득세와 법인세 합계의 국민소득 대비 비중, E 는 소득세와 법인세 합계의 소득탄력성으로 정의되며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 합계의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비율로 정의된다.

Miller(1948)에서 제시된 동일한 모형으로 1950년대 중반의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한 바 있다(Eilbott(1966)에서 재인용).

Eilbott(1966)은 Musgrave and Miller(1948)와 달리 이전지출의 변화에 따른 소비의 변화를 모형에 내재화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다. Musgrave and Miller(1948)이 향후 연구방향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소비세(excise tax)의 경우 소비지출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확대되는 형태로 소비세도 모형에 내재화되어 있다.

1990년대에 대규모 재정적자가 여러 국가들에서 발생하면서 이후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기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Romer(1999)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하여 경기 수축의 크기가 작고 경기 확장기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성장률의 분산이 축소되는 현상을 소득과세체계와 실업급여와 같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들이 작동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Cohen and Follette(2000)는 다양한 세목과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계열분석과 대규모 거시모형(FRB/US)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유효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 10%의 총수요 충격이 소득세와 실업급여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Auerbach and Feenberg(2000)은 1962~1995년의 미국 소득세 및 payroll tax 세수입자료와 세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세와 급여세(payload tax)가 GDP에 발생한 충격의 약 8%를 흡수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소득세 및 급여세의 경기조절 기능은 개인소득세율이 가장 높았던 1980년대에서 가장 컸고 1990년대 중반의 경우 196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나 1970년대와 1980년대보다는 다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저자들은 법인세와 실업급여를 또 다른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경로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법인세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Devereux and Fuest(2009)는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1980~2007년 영국의 537개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로서 영국 법인세제의 역할은 지난 30년간 매우 미미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Devereux and Fuest(2009)이 Pechman(1973)의 방식을 영국 자료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제를 통한 경기안정화 효과는 총소득에 발생한 외부 충격의 1% 수준을 완화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은 과세대상 소득과 손실을 법인세법에서 다르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손실을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완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영국의 법인세제는 총법인소득에 발생한 충격의 8.5% 수준을 축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uettner and Fuest(2010)는 Devereux and Fuest(2009)와 유사한 이론적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2003년 6월~2007년 8월 독일의 제조업 법인들의 서베이자료(Ifo Business Survey)와 기업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이들은 기업규모와 세율의 변화를 통제한 후 추정한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을 법인소득 변화의 8%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제의 자동안정화 효과는 경기변동 국면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경기하강 국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부 세목에 대해서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해 왔다. Furceri and Karras(2011)는 26개 OECD 국가들의 평균 실효세율의 경기순환적인 특성을 1965~2003년의 기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분석결과는 세율과 GDP의 경기변동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고 Tax Smoothing 이론을 뒷받침한다. 일반적으로 케인즈의 모형하에서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여 경기호황기에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침체기에는 세율을 인하하여 세금을 덜 걷어야 한다. 이러한 케인즈적 정책방향과는 달리, Furceri and Karras(2011)의 분석결과는 세율을 평탄하게 유지하면서(tax smoothing) 침체기의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침체기에 발생한 정부부채를 경기 호황기의 세수 여유분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인 Vegh and Vuletin(2015)는 62개 국가들의 소

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 변화를 각 세목의 세수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세율종합지수를 1962~2013년의 기간에 대해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선진경제에서는 조세정책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수행되지만 개발국가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세율의 변화로 측정된 조세정책의 변화는 경기순환주기에 순행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본적인 이들의 분석결과는 조세제도가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보다는 해당 경기국면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 것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조세정책의 경기순행적인 특성은 재정지출이 경기순행적인 특성을 갖는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경기순환주기상에서 거의 유사하게 수행되어 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 본 연구의 분석방법

세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조절 기능 또는 자동안정화 기능은 관련 기존 연구에서처럼 세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제에 일시적 충수요 충격이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소득의 변화가 세제가 도입되지 않은 가상의 경제에 발생한 일시적 충수요 충격에 의해 초래되는 소득의 변화보다 얼마나 작은지를 나타낸다. Musgrave and Miller(1948)은 이러한 세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조절 기능을 'built-in-flexibility in the tax'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Eilbott(1966), Auerbach and Feenberg(2000) 등 이후의 연구들에서 세제의 자동안정화 기능(automatic Stabilizer)으로 표현되고 있다.

Musgrave and Miller(1948)를 비롯한 기존 연구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조절 기능 또는 자동안정화 기능은 경기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의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소득 또는 산출의 변동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세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조절 기능 또는 세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은 경기 변화에 대응하여 재량적으로 정부가 수행한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를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의 변화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특정 기준 연도의 세제와 각 연도별 경기여건 및 경제주체들의 소득 분포 등을 반영하여 세수를 다시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해마다 세

제개편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개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다소 엄밀성은 낮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해서 보다 간단한 승수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Musgrave and Miller(1948)에 의해 제시됐으며 이후 Eilbott(1966) 등에 의해 개선됐다. 승수모형을 이용한 세제의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대략적인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지만 거시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고전적 자동안정화 효과 측정방법인 Musgrave and Miller(1948)의 승수모형을 이용하여 하나의 참고자료로 우리나라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매해 수행되는 세제개편의 효과를 엄밀히 측정하여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제시될 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는 정부의 재량적 경기 대응 방안으로 시행된 조세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기 판단의 오류, 정책수단의 오류, 또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정책시행 시차에 따른 오류 등의 효과도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효과를 포괄하고 있으나 이를 세분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조세관련 변수와 GDP를 이용하여 최소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기에 대응하여 역행적으로 수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케인지언의 주장대로 경기 확장기에는 세율을 인상하여 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추가적인 경기과열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세율을 인하하여 보다 적은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방지했다면 평균 실효세율 및 GDP 대비 세수 비중은 GDP의 경기변동분(cyclical component)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만약 이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경기 여건과 상관없이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침체기에는 부족한 재원을 부채로 조달하고 확장기에는 여유분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조세평탄화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Furcerri and Karras 2011).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총량자료 및 GDP 자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경

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운용되어왔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국세청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주요 세목에 대한 개별 납세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가운데 세제 변화에 따른 자동안정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감사대상 법인들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²⁰⁾ 개별 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각 기업이 직면한 법정한계세율, 평균 실효세율 등 기업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공제를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법인세의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세제 변화를 반영하는 분석을 수행한 기존 연구로는 Devereux and Fuest(2009), Buettner and Fuest(2010)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두 가지 실증분석 이외에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의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세율의 변화에 따른 자동안정화 효과의 변화 및 결손금 처리방식에 따른 자동안정화 효과의 변화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의 자동안정화 효과 추정방법들 중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가용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세 가지의 측정방법을 간략히 소개했다. 명시적으로 세목을 구분하지 않거나 한 가지 세목의 경기조절 기능을 분석하고 있는 기존 연구와 달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각각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이에 앞서서 각 추정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0)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과 법인세 신고서식에서 찾을 수 있는 법인세 부담액 사이에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증감의 차이가 있다. 또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법인세 신고서식상의 과세표준에는 세무조정 및 이월결손금공제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지표들과 세무회계 기준에 따라 조정된 법인세 신고서식상의 지표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법인세 신고정보의 활용 제약성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재무제표상의 지표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후에서 상술하겠으나,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정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후자법인들의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의 근사치를 추정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1) 승수모형을 이용한 자동안정화 효과

세목별로 개별 납세자의 미시자료의 구축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므로 총량 자료로 대략의 세목별 경기조절 기능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Musgrave and Miller(1948)과 Eilbott(1966)과 유사한 승수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서 해외부문을 생략한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개별적으로 부과되거나 모두 함께 부과되는 경제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GDP의 변화가 해당 세제가 없는 경제에서 외부충격에 의해 발생한 GDP의 변화를 얼마나 축소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본 모형의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dY^{AS} 가 세제를 통한 경기 자동안정화 시스템이 있는 경제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GDP의 변화를 나타내고 dY^X 가 해당 경기 자동안정화 시스템이 없는 경제에서 총수요 충격에 의해 발생한 소득의 변화를 나타낼 때,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는 $\gamma = 1 - dY^{AS}/dY^X$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 γ 는 세제에 의해 완화된 소득 변화분을 세제가 없는 경제의 소득 변화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추정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자세한 도출과정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I-1〉 세목별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

구분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
소득세 부과	$\gamma_P = \frac{c \tau_P \rho_H}{1 - c(1 - \tau_P) \rho_H}$
법인세 부과	$\gamma_C = \frac{\rho_F (1 - i(1 - \tau_C))}{1 - c \rho_H - i(1 - \tau_C) \rho_F}$
부가가치세 부과	$\gamma_V = \frac{c^2 (1 - \hat{\tau}_V) \rho_H}{1 + c(1 - \hat{\tau}_V) - c \rho_H}$
3대 세목 모두 부과	$\gamma_{all} = \frac{c \rho_H (1 - (1 + (1 - \hat{\tau}_V))^{-1} (1 - \tau_P)) + \rho_F (1 - i(1 - \tau_C))}{1 - c \rho_H (1 + c(1 - \hat{\tau}_V))^{-1} (1 - \tau_P) - \rho_F i (1 - \tau_C)}$

주: 1. c 한계소비성향, i 한계투자성향, τ_P 소득세 실효세율, τ_C 법인세 실효세율, τ_V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hat{\tau}_V = 1/(1 + \tau_V)$, ρ_H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 ρ_F GDP 대비 법인영업잉여 비중

2. 보다 자세한 도출 과정은 부록을 참조

자료: Musgrave and Miller(1948)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실질GDP 경기변동분과의 상관관계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총량자료 및 GDP 자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경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균 실효세율 및 GDP 대비 세수비중과 같은 조세관련 변수가 실질GDP의 경기변동분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케인지언의 주장대로 우리 정부가 경기를 적극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확장기에 세율을 인상하고 수축기에 세율을 인하했다면 평균 실효세율 및 GDP 대비 세수비중과 같은 조세관련 변수가 실질GDP의 경기변동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세평탄화(tax smoothing) 이론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추정되면,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경기순응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해당 국면의 경기를 더욱 심화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세목의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평균 실효세율을 구할 수도 있으나 세목별로 시계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장 긴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계정상 과세베이스를 기반으로 측정한 평균 실효세율을 이용한다. 또한 기타 세수의 경우 3대 기간세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국민계정상의 과세베이스를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총국세의 경우와 함께 경상GDP를 과세베이스로 삼고 평균 실효세율의 근사치를 구한다.

GDP의 추세분과 경기변동분은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필터링기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통계프로그램 Stata에 내재되어 있는 Baxter-King 필터와 Hodrick-Prescott 필터를 이용하여 GDP의 추세를 제거한 경기변동분을 추정하고 조세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한다.

3) 미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제 자동안정화 효과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법인세수의 변동성은 매우 크고 경기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세제의 자동안정화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율부터 과세대상 소득의 정의를 비롯한 비과세감면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세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다 엄밀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 납세자료로부터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개별 납세자료의 일부 정보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세제의 자동안정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²¹⁾

아래에서 소개할 Devereux and Fuest(2009)와 Buettner and Fuest(2010)은 각각 영국과 독일의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 및 신용계약 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세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각 국가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의 차이에 따라 다른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의 유사한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Devereux and Fuest(2009)와 Buettner and Fuest(2010)에 따르면, 법인세가 자동안정화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법인세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발생한 경제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세후이익의 변화를 축소한다. 예를 들어, 10%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전이익이 1억원 축소될 때 세후소득은 내야 할 법인세부담의 축소로 인해 9천만원만 축소된다. 법인세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이익의 변화는 그대로 1억원이지만 법인세에 의해 세후소득의 변화가 축소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의 투자 등 기업의 지출에 대한 의

21) 소득세제 자동안정화 효과도 재정패널과 같은 미시자료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Auerbach and Feenberg(2000)가 제시한 바와 같이, 세전소득의 변화가 세제에 의해 얼마나 완화되었는지를 보다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득의 변화가 얼마나 개별 가구의 소비 변화를 축소시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동성 제약을 갖고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Auerbach and Feenberg(2000)는 가구의 유동성 제약을 절대적 기준으로 차입이 어려운 가구로 정의하지 않고 대출이자율과 저축이자율에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본원에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겠으나 대출이자율(부채 대비 이자지급액)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가구별 저축이자율(저축금액 대비 이자수입액)을 결정하는 저축금액과 이자수입액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사결정은 자본비용과 투자의 수익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가 수축되는 경우 외부 자원조달의 어려움은 커진다. 이러한 경우 먼저 살펴본 세후이익의 변화를 축소해주는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수요의 변화를 축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소득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이러한 법인세의 역할은 은행 차입 또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특히 중요하다. 자본시장이 완벽하지 못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기업들은 내부에 가용한 재원의 크기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세후소득 변동성 축소 기능은 경제 전체의 투자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기변동 자체의 크기를 축소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기업이어야 한다. 세무회계상 적자기업은 부담할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법인세의 자동안정화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는 Devereux and Fuest(2009)와 Buettner and Fuest(2010)의 법인세 자동안정화 효과 측정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Devereux and Fuest의 측정방법

Devereux and Fuest(2009)(이하 DF)는 개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DF의 법인세제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 측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²²⁾

22) 이들이 사용한 법인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는 데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자원조달에 제약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다.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자료는 KISVALUE의 기업별 신용등급 자료이다. KISVALUE의 기업별 신용등급 자료는 1부터 10등급까지로 평가되고 7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다.

$$AS_t^{DF} = \max[\tau(k_t - l_t), 0]$$

여기서 τ 는 기업들이 직면한 법정한계세율의 기중평균, k 은 신용제약(credit-constrained)을 갖고 있는 기업 비중, l 은 적자기업 비중을 나타낸다. DF의 자동안정화 효과는 t-연도의 투자에 미치는 법인세제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한다. 다시 말해, 법인세제가 없었을 때 경제충격에 의해 축소되는 투자 중에서 법인세제로 인해 완화되는 투자의 축소분의 비율을 측정한다.

신용제약기업들의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모형에서 신용제약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들은 당해 사업연도에 세법상 흑자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충격이 발생해서 기업의 소득이 축소됐을 때, 외부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투자는 사내유보로 한정되는 반면 신용제약을 겪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사내에 가용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투자재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투자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부충격이 일시적일 경우 신용제약이 없는 흑자기업들은 부족한 투자재원을 외부조달을 통해 충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내부재원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신용제약기업들의 경우 외부충격에 의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세금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득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가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DF 모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세법상 적자기업들의 비중이다. 세법상 적자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제 충격에 따른 소득 감소에 의해 초래되는 세후소득의 변화는 법인세제에 의해서 완화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나 신용제약이 있으면서 한계적으로 법인세를 τ 의 세율로 내는 기업들은 흑자기업들의 투자는 외부충격에 의한 총소득의 감소분에 $(1-\tau)$ 를 곱한 순소득의 감소분만큼 감소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총소득의 감소분에 τ 를 곱한 만큼 법인세 부담이 축소되고 이 만큼은 투자 감소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투자 감소 완화효과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신용제약기업들 중에서 세금

을 부담하는 한계적 흑자기업들이다(Devereux and Fuest 2009).

이들이 사용한 영국의 서베이 자료(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는 신용제약기업들이면서 흑자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들이 제시한 $AS_t^{DF} = \max[\tau(k_t - l_t), 0]$ 의 측정식은 k 가 l 보다 작으면 모든 신용제약기업들은 적자기업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모든 기업이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동안정화 효과는 없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신용제약기업들 중 일부는 흑자기업이고 s 만큼의 소득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투자의 감소분은 법인세제가 없는 경우 ks 이고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의 투자 감소분은 $(k-l)(1-\tau)s + ls$ 가 된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제에 의해서 완화되는 투자 감소분은 $ks - (k-l)(1-\tau)s - ls = \tau(k-l)s > 0$ 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내에 속한 기업들 중 신용제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적자기업인 경우, 즉 $k \leq l$ 인 경우, 법인세제의 경기안정화 효과는 없다. 이러한 방식을 영국의 자료에 적용한 결과, 법인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장치의 효과는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Buettner and Fuest의 측정방법

Buettner and Fuest(2010)(이하 BF)의 법인세제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 측정식은 앞서 살펴본 DF 모형과 매우 유사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S_t^{BF} = \tau_t \frac{m_t}{n_t}$$

여기서 τ 는 신용제약기업들이면서 세법상 흑자인 기업들이 직면한 법정 한계세율의 가중평균, m 은 흑자기업 중 신용제약(credit-constrained)을 갖고 있는 기업의 수, n 은 전체 기업 수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BF의 법인세제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는 경제 내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신용제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그 기업들의 법정한계세율의 가중평균을 곱하여 얻은 비율이 된다. 이 비율은 법인세제 자

동안정화 효과에 의해 법인세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제충격에 의해 위축될 투자 감소분이 덜 위축되는 정도를 나타내 준다. 상기 비율에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구한 비율만큼 법인세 자동안정화 기능에 의해 GDP의 감소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신용제약기업이면서 흑자기업을 추출할 수 있는 독일의 제조기업 자료(Ifo business survey)를 이용하는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BF 측정방법을 독일 제조기업의 자료에 적용한 결과 약 8%의 투자 감소 완화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승수모형을 이용한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

가.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

소득세만 부과하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따른 소득 변화분의 어느 정도를 소득세제가 완화해주는지를 측정하는 식은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보다 긴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계정상의 과세베이스를 사용하여 계산했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연도별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는 약 1.5~4.7% 수준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의 해석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부연하자면, 특정연도의 소득세제의 경기조절 효과의 추정치 4.5%는 경제충격에 의해 발생한 소득 변화분이 100일 때 이 중 4.5만큼이 소득세제에 의해서 소득 변화분이 완화됐음을 의미한다. 경기 확장기에 이러한 소득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소득세제에 의해 소득증가분이 4.5만큼 축소되어 경기팽창을 억제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경기 수축기에 이러한 소득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소득감소분이 4.5만큼 축소되어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에서 소개될 다른 세목들의 경기조절 효과를 해석할

수 있다.

승수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득세제에 의한 소득 변화를 완화해주는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기조절 기능은 1975년 이후 추세적으로 소폭 낮아지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 이후 2007년 가장 높은 수준의 경기조절 기능을 보였다. 이후 다시 소폭 하락 추이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uerbach and Feenberg(2000)은 미국의 급여세와 소득세에 의해 GDP에 주어진 충격의 8% 정도가 완화됐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²³⁾ 추정자료와 방법은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소득세제에 의한 경기조절 크기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면별로 살펴보면, 확장기와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평균으로 살펴보다라도 2000년대까지 경기국면별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가 0.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2007년 이후의 기간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확장기의 경기조절 효과보다 크고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의 차이도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최근 추이는 2009년 이명박정부 부자감세 논란 이후 38% 최고세율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 등에 의해 소득세의 누진도가 확대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5년 연말정산 파동 이후 보완조치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향후 소득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Cohen and Follette(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동성제약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경제충격에 의해 소득감소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세제의 경기조

23) Auerbach and Feenberg(2000)의 경우 미시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절 효과의 크기는 경기동행지수 증가율과 대체적으로 추이를 같이하다가 이후부터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이 낮을 때 경기조절 효과의 크기가 더욱 확대되고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이 높을 때 축소되는 반대의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추이는 1990년대 초반 이전에는 경기 수축기의 경기조절 기능보다는 경기 확장기의 경기조절 기능이 더욱 컸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경기 확장기의 경우보다는 경기 수축기에 경기조절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을 의미한다.

〈표 III-2〉 소득세의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 기간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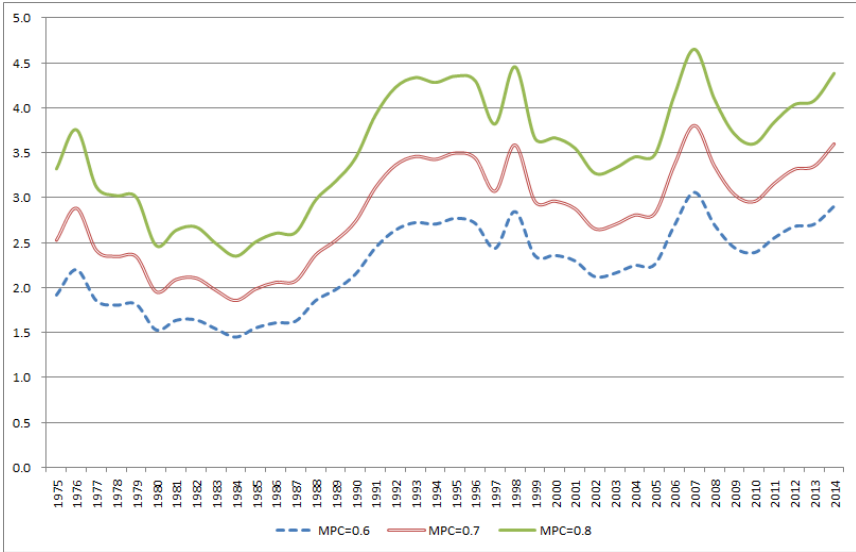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경기조절효과 I (MPC=0.6)		경기조절효과 II (MPC=0.7)		경기조절효과 III (MPC=0.8)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2.3	2.3	2.9	2.9	3.5	3.6
1980년대	1.7	1.7	2.2	2.2	2.7	2.8
1990년대	2.6	2.7	3.2	3.4	4.0	4.2
2000년대	2.5	2.4	3.1	2.9	3.8	3.6
2007~2014년	2.6	2.7	3.2	3.4	3.9	4.1
2008~2014년	2.5	2.7	3.1	3.4	3.7	4.1
2009~2014년	2.5	2.8	3.1	3.4	3.7	4.2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1]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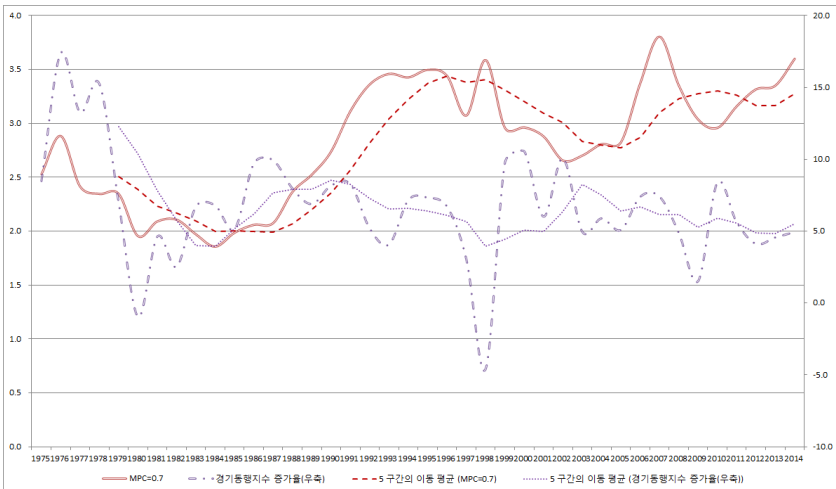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2]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자료와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

〈표 Ⅲ-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 경제에서 외부충격에 의한 발생한 GDP 변화분 중에서 법인세제 도입으로 완화된 GDP 변화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함으로써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인 법인부문 영업잉여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아래의 그림과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약 14~22% 수준으로 추정됐다. 다시 말해서, 경제충격에 의해 발생한 GDP의 변화분 중 법인세제에 의해서 14~22% 정도 흡수되고 실제 경제에 발생한 GDP의 변화분은 78~86% 수준이라는 것이다.²⁴⁾

법인세의 경기조절 기능은 연도별 등락 속에 1979~1998년 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낮아지다가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2010년부터 다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국면별로 살펴보면, 확장기와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평균으로 살펴보더라도 경기국면별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의 경기조절 효과가 확대됐던 것과는 달리 1979년 이후부터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미세하게나마 법인세 경기조절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법인세의 경우 2000년 초반까지는 대체적으로 경기동행지수 증가율과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는 같은 추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5년 평균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경기조절

24) 승수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는 법인세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경기조절 효과가 제시되지는 않아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제약기업들에 대한 미시자료를 이용한 Devereux and Fuest(2009)와 Buettner and Fuest(2010)의 실증분석결과는 법인소득의 1~8% 수준의 법인세제 경기조절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25) 이러한 현상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지만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보다 명확히 분석되어야 한다.

효과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제 정비를 통한 세율 인하 추이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여타 지원제도의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는 2000년대 이후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이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 III-3〉 법인세의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 기간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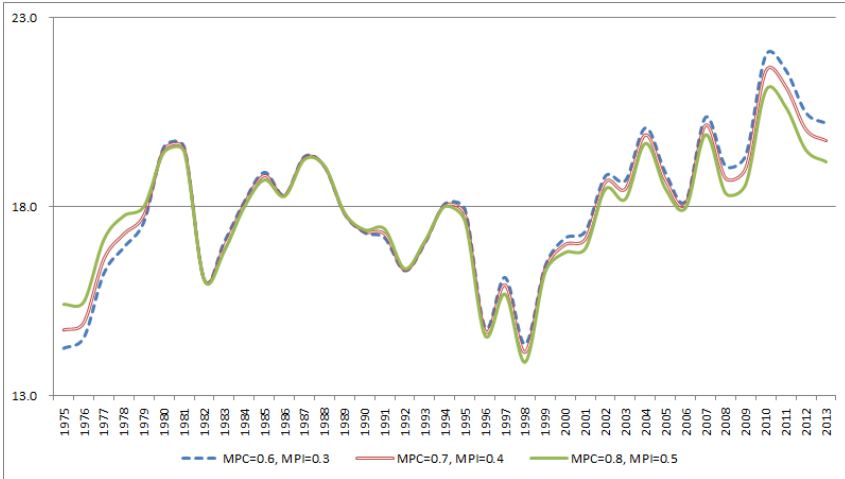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경기조절효과 I (MPC=0.6, MPI=0.3)		경기조절효과 II (MPC=0.7, MPI=0.4)		경기조절효과 III (MPC=0.8, MPI=0.5)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18.5	18.0	18.3	17.8	18.2	17.6
1980년대	17.9	18.5	17.9	18.4	17.9	18.4
1990년대	17.3	15.4	17.3	15.3	17.2	15.1
2000년대	19.6	18.8	19.4	18.6	19.1	18.3
2007~2013년	20.8	19.9	20.5	19.5	20.1	19.0
2008~2013년	21.0	19.9	20.6	19.5	20.1	19.0
2009~2013년	21.0	20.3	20.6	19.9	20.1	19.3

주: 연도는 귀속연도를 나타내며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수/법인부문 영업잉여"를 사용함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3]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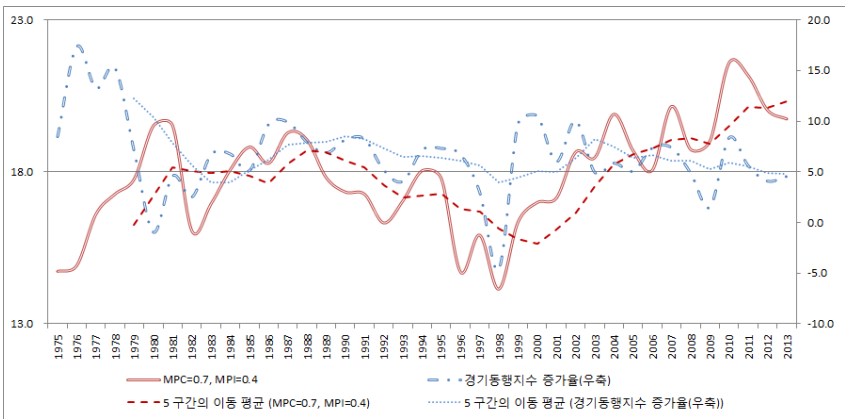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4]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자료와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부가가치세의 경기조절 효과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만 도입된 경우의 경기조절 효과

를 측정해 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표에 나타나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기 조절 효과는 대부분 경제에 발생한 충격의 3% 미만의 GDP 변화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에 의해서 경기 확장기에 증가한 소득의 일부분이 축소되는 효과와 경기 수축기에 감소한 소득의 일부분이 완화되는 효과가 약 3% 미만으로 3대 기간세목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 수준에 기초한 개인소득세처럼 작용해서 소비량의 증대 또는 감소를 억제하며 경기국면별 GDP의 변화를 억제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연도별 등락 속에 부가가치세의 경기조절 효과는 추세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율은 제도 도입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어서 실질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종소비에 대해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경기조절 효과는 경제 전반의 여건 변화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중반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경기조절 효과가 경기종합지수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확대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간에서 두 변수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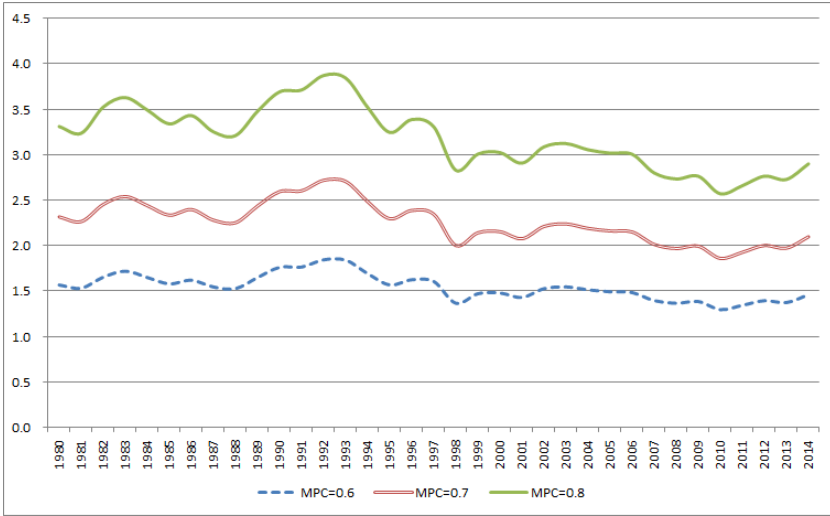
〈표 III-4〉 부가가치세의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 기간별 평균 (단위: %)

구분	경기조절효과 I (MPC=0.6, MPI=0.3)		경기조절효과 II (MPC=0.7, MPI=0.4)		경기조절효과 III (MPC=0.8, MPI=0.5)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간	1.6	1.5	2.3	2.2	3.2	3.1
1980년대	1.6	1.6	2.4	2.4	3.5	3.4
1990년대	1.6	1.6	2.4	2.4	3.4	3.3
2000년대	1.4	1.5	2.1	2.1	2.9	3.0
2007~2014년	1.4	1.4	1.9	2.0	2.7	2.8
2008~2014년	1.3	1.4	1.9	2.0	2.7	2.8
2009~2014년	1.3	1.4	1.9	2.0	2.7	2.8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5] 부가가치세의 경기조절 효과: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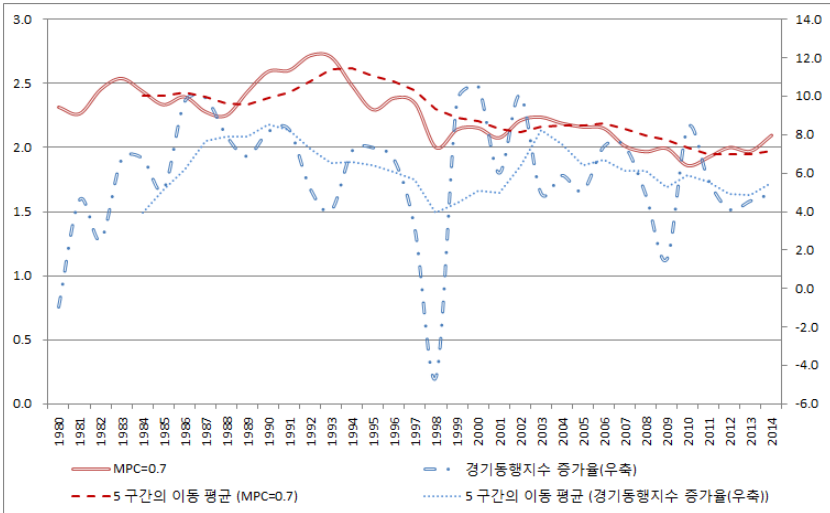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6] 부가가치세의 경기조절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자료와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3대 기간세목의 경기조절 효과

앞에서 살펴본 3대 기간세목이 모두 도입된 경우 경제충격에 의해 초래되는 GDP 변화분의 약 20~25%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규모는 Eilbott(1966)에서 1948~1958년 사이에 있었던 3번의 침체에 대해 제시된 미국의 경기조절 효과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Eilbott(1966)의 평균 추정치는 약 32.8~48.6%인데, 이러한 추정에 사용된 한계소비성향은 0.8~0.9이고 한계투자성향은 0.3~0.5이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이고 한계투자성향이 0.3일 때 미국 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는 32.8%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같은 한계소비성향과 한계투자성향을 가정할 때 1975년 이후 전 기간 평균 3대 세목의 경기조절 효과는 수축기 평균 27.0%로 Eilbott의 추정치 하한보다 약 6%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ilbott의 추정치는 소비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의 개별소비세(excise tax)에 의한 경기조절 효과를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경기조절 효과 추정치는 Eilbott의 추정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3대 기간세목의 경기조절 효과를 경기국면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확장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더욱 크게 추정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의 경기국면별 양상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3대 기간세목의 경기조절 효과는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여타 세목의 실효세율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나 있는 3대 기간세목의 경기조절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조절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이후부터는 반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경기조절 효과는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낮아지며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추세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3대 세목의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 기간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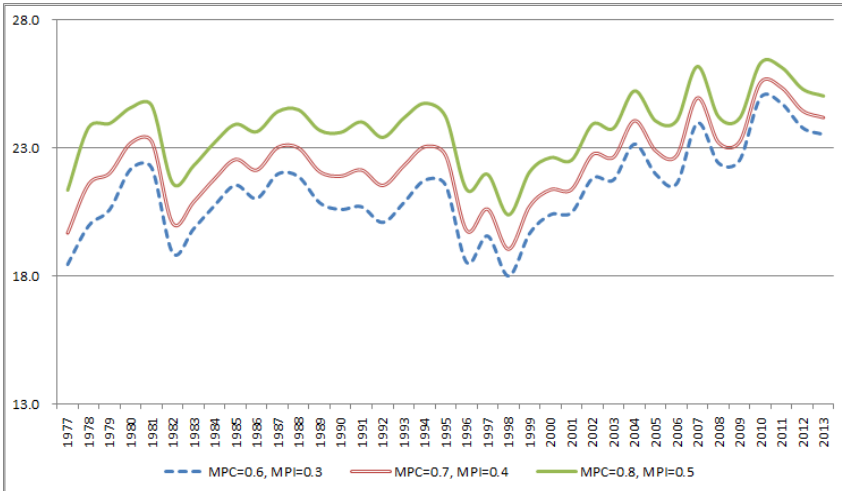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경기조절효과 I (MPC=0.6, MPI=0.3)		경기조절효과 II (MPC=0.7, MPI=0.4)		경기조절효과 III (MPC=0.8, MPI=0.5)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전기	21.6	21.1	22.6	22.1	23.9	23.3
1980년대	20.7	21.2	21.8	22.3	23.2	23.7
1990년대	20.7	19.0	22.0	20.1	23.5	21.7
2000년대	22.8	21.9	23.6	22.7	24.7	23.8
2007~2013년	24.0	23.2	24.7	23.9	25.6	24.7
2008~2013년	24.0	23.2	24.6	23.9	25.4	24.7
2009~2013년	24.0	23.6	24.6	24.2	25.4	25.1

주: 연도는 귀속연도를 나타내며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수/법인부문 영업이익어"를 사용함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7〕 3대 세목의 경기조절 효과: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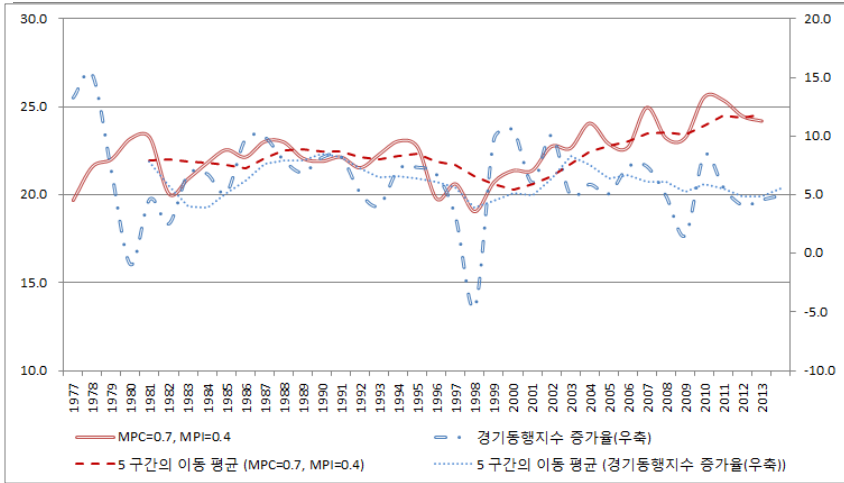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8] 3대 세목의 경기조절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자료와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실질GDP 경기변동분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추세를 제거한 실질GDP의 경기변동분과 GDP 대비 세수 비중 및 평균 실효세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조세변수는 경기 역행적이며 경기조절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기 확장기에 세금을 더욱 더 많이 징수함으로써 추가적 확장을 억제하고 경기 수축기에 세금을 덜 징수함으로써 추가적 수축을 억제한다. 경기 순행적인 경우에는 확장에 세금을 덜 징수해서 추가적 확장을 촉진하고 수축기에는 세금을 더 징수함으로써 추가적 침체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케인지언이 일컫는 재정정책의 경기 역행적 성향은 재정지출의 경우 실질GDP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조세정책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표 III-6>~<표 III-15>에 제시되어 있는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균 실효세율과 GDP 대비 세수비중은 대체적으로 추세를 제거한 실

질GDP의 경기변동분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미약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Furceri and Karras(20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기 여건과 상관없이 세율을 평탄하게 유지하면서 경기 수축기에 부족한 재원을 차입으로 조달하고 경기 확장기에 여유 재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조세평탄화(tax smoothing)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경기 확장기에 세율을 높여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며 경기의 추가적 확장을 억제하거나 경기 수축기에 세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예외적으로 경기 확장기에 세수, 세수의 GDP 대비 비중, 국민계정 과세베이스 기준 평균 실효세율이 실질GDP의 경기변동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확장기의 조세정책이 경기순응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 수축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세제개편이 경기 확장기에도 지속 유지되었거나 세제개편의 시행 시차로 인해 효과가 확장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추세제거 필터에 따라 다른 결과가 추정되어 일의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총국세의 경우 경기국면에 상관없이 총국세의 수준변수와 GDP 대비 비중은 실질GDP 수준변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총국세 수입과 GDP 대비 국세 수입 비중은 실질GDP와 매우 밀접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세수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세를 제거한 실질GDP의 경기변동분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아서 경기역행적으로 조세정책이 작동하며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용한 추세제거 필터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면별로 살펴보면, 추세를 포함한 경우에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수 수준변수는 확장기에 실질GDP 경기변동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확장기에 조세정책의 효과가 경기를 추가적으로 부양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조세정책을 포함한 세계가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경기순응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한 추세제거 필터 중 BK 필터의 경우의 확장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결과이고 평균 세율의 개념인 GDP 대비 총국세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총국세수입을 기준으로 한 조세정책이 전반적으로 경기순응적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상관계수에 큰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2000년 이전 HP 필터로 실질GDP의 추세를 제거한 경우 확장기의 GDP 대비 총국세수입 비중 및 총국세 수준변수와 실질GDP의 경기변동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전 확장기의 조세정책이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BK 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음(-)의 상관계수가 추정되고 있어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2000년 이후 확장기에서 총국세수입의 수준변수가 실질GDP의 경기변동분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가지 필터가 동일한 결과를 지지하지는 않고 있으며 GDP 대비 세수비중은 실질GDP 경기변동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2000년 이후의 조세정책을 경기순응적이라 보기 어렵다.

개별 세목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총국세 수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확장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경기순응적 조세정책 운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확장기 소득세의 평균 실효세율과 실질GDP 경기변동분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는 BK 필터와 HP 필터에 의해 지지된다. 법인세의 경우 2000년 이전 수축기에서 관측된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과 실질GDP의 경기변동분 사이에 나타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법인세 실효세율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실질GDP의 경기변동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세수의 경우에도

세수의 GDP 대비 비중과 실질GDP의 경기변동분 사이에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측되어지나 사용필터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경기순응적 또는 경기역행적이라는 일의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²⁶⁾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운용기조는 대체적으로 경기역행적이라기보다는 조세평탄화(tax smoothing)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경기침체에 세율을 인하하거나 경기 확장기에 세율을 인상하거나 하는 등 케인지언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부채로 조달하고 경기 확장에 따른 세수 여유분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표 III-6〉 실질GDP와 총국세의 상관관계: 전 기간

구분	전체기간			경기국면별					
	실질 GDP	추세제거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1)	(2)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총국세	0.995 (0.000)	0.093 (0.574)	0.044 (0.775)	0.994 (0.000)	0.996 (0.000)	-0.512 (0.025)	0.090 (0.706)	-0.033 (0.883)	0.286 (0.197)
GDP 비중	0.932 (0.000)	0.118 (0.476)	0.092 (0.547)	0.928 (0.000)	0.939 (0.000)	-0.340 (0.154)	-0.049 (0.837)	0.089 (0.687)	0.198 (0.378)

주: 1. 괄호 안은 p-value 값임

2. 추세제거(1)은 Baxter-King Filter를 사용하여 추세치를 제거한 값임

3. 추세제거(2)는 Hodrick-Prescott Filter를 사용하여 추세치를 제거한 값임

4. 경기국면은 실질GDP의 경우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기순환주기를 이용하였고, 추세제거의 경우에는 각 방법에 따라 추세를 제거한 실질GDP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 세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 세목의 세수합계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표준을 국민계정이나 국세통계에서 찾기 어려워서 GDP 대비 비율로 실효세율의 근사치를 구했다.

27)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조세평탄화 이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경기 확장에 확대되지 않고 여유재원은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정지출 측면을 고려한 분석이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7〉 실질GDP와 총국세의 상관관계: 2000년 전후

구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총국세	0.99 (0.00)	0.99 (0.00)	-0.38 (0.22)	-0.24 (0.39)	0.44 (0.10)	-0.01 (0.97)	0.97 (0.00)	0.99 (0.00)	-0.74 (0.06)	0.59 (0.29)	-0.17 (0.69)	0.07 (0.88)
GDP 비중	0.87 (0.00)	0.88 (0.00)	-0.05 (0.87)	-0.37 (0.18)	0.60 (0.02)	-0.11 (0.70)	0.20 (0.64)	0.56 (0.19)	-0.58 (0.17)	-0.80 (0.10)	0.07 (0.86)	0.02 (0.96)

주: 〈표 III-6〉의 표주 1~4 참조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8〉 실질GDP와 소득세의 상관관계: 전 기간

구분	전체기간			경기국면별					
	실질GDP	추세제거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1)	(2)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소득세수	0.990 (0.000)	0.108 (0.511)	0.039 (0.802)	0.993 (0.000)	0.989 (0.000)	-0.533 (0.019)	0.185 (0.435)	-0.131 (0.552)	0.326 (0.139)
GDP 비중	0.859 (0.000)	0.120 (0.466)	0.049 (0.747)	0.894 (0.000)	0.831 (0.000)	-0.481 (0.037)	0.287 (0.219)	-0.282 (0.193)	0.350 (0.111)
실효세율	0.904 (0.000)	0.065 (0.705)	0.036 (0.825)	0.908 (0.000)	0.900 (0.000)	-0.487 (0.035)	0.348 (0.157)	-0.500 (0.029)	0.327 (0.147)

주: 〈표 III-6〉의 표주 1~4 참조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9〉 실질GDP와 소득세의 상관관계: 2000년 전후

구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소득세수	0.99 (0.00)	0.99 (0.00)	-0.41 (0.19)	-0.17 (0.56)	0.38 (0.16)	0.01 (0.97)	0.95 (0.00)	0.93 (0.00)	-0.85 (0.02)	0.64 (0.25)	-0.16 (0.70)	0.05 (0.91)
GDP 비중	0.83 (0.00)	0.64 (0.01)	-0.27 (0.39)	-0.09 (0.75)	0.26 (0.35)	-0.03 (0.90)	0.63 (0.09)	0.47 (0.29)	-0.89 (0.01)	0.09 (0.89)	-0.09 (0.84)	-0.06 (0.90)
실효세율	0.91 (0.00)	0.90 (0.00)	-0.32 (0.31)	-0.08 (0.80)	0.11 (0.74)	-0.11 (0.71)	0.85 (0.01)	0.68 (0.10)	-0.87 (0.01)	0.45 (0.44)	-0.10 (0.82)	-0.04 (0.93)

주: 〈표 III-6〉의 표주 1~4 참조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0〉 실질GDP와 법인세의 상관관계: 전 기간

구분	전체기간			경기국면별					
	실질 GDP	추세제거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1)	(2)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법인세수	0.985 (0.000)	0.114 (0.490)	0.029 (0.854)	0.987 (0.000)	0.984 (0.000)	-0.538 (0.018)	0.202 (0.393)	-0.133 (0.547)	0.291 (0.201)
GDP 비중	0.482 (0.001)	0.184 (0.262)	-0.002 (0.991)	0.647 (0.001)	0.283 (0.226)	-0.387 (0.102)	0.326 (0.161)	-0.309 (0.151)	0.263 (0.250)
실효세율	0.210 (0.199)	0.191 (0.257)	-0.085 (0.608)	0.286 (0.198)	0.131 (0.616)	-0.017 (0.945)	0.182 (0.469)	0.033 (0.893)	-0.020 (0.933)

주: 〈표 III-6〉의 표주 1~4 참조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1〉 실질GDP와 법인세의 상관관계: 2000년 전후

구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법인세수	0.97 (0.00)	0.97 (0.00)	-0.42 (0.17)	-0.09 (0.75)	0.32 (0.24)	0.06 (0.84)	0.92 (0.00)	0.99 (0.00)	-0.60 (0.16)	0.56 (0.32)	-0.32 (0.44)	-0.07 (0.90)
GDP 비중	0.55 (0.03)	0.05 (0.87)	-0.33 (0.30)	0.22 (0.48)	-0.15 (0.60)	0.17 (0.55)	0.54 (0.17)	0.94 (0.00)	-0.31 (0.50)	0.11 (0.86)	-0.42 (0.31)	-0.06 (0.91)
실효세율	0.53 (0.05)	0.36 (0.28)	-0.13 (0.68)	-0.09 (0.75)	0.21 (0.54)	0.05 (0.87)	-0.16 (0.71)	0.61 (0.20)	0.07 (0.88)	-0.75 (0.14)	-0.45 (0.27)	-0.21 (0.70)

주: 〈표 III-6〉의 표주 1~4 참조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2〉 실질GDP와 부가가치세의 상관관계: 전 기간

구분	전체기간			경기국면별					
	실질 GDP	추세제거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1)	(2)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부가가치세수	0.983 (0.000)	-0.058 (0.741)	-0.062 (0.712)	0.976 (0.000)	0.994 (0.000)	-0.530 (0.020)	0.441 (0.087)	-0.455 (0.050)	0.394 (0.095)
GDP 비중	0.634 (0.000)	-0.267 (0.121)	-0.106 (0.526)	0.627 (0.002)	0.657 (0.004)	-0.417 (0.076)	0.223 (0.406)	-0.252 (0.298)	0.467 (0.044)
실효세율	0.753 (0.000)	-0.165 (0.343)	-0.059 (0.726)	0.728 (0.000)	0.838 (0.000)	-0.511 (0.025)	0.580 (0.018)	-0.279 (0.248)	0.645 (0.003)

주: 〈표 III-6〉의 표주 1~4 참조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3〉 실질GDP와 부가가치세의 상관관계: 2000년 전후

구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세수	0.94 (0.00)	0.99 (0.00)	-0.41 (0.18)	0.14 (0.67)	-0.04 (0.92)	0.10 (0.75)	0.98 (0.00)	0.99 (0.00)	-0.82 (0.02)	0.77 (0.13)	-0.12 (0.77)	0.12 (0.80)
GDP 비중	0.41 (0.17)	-0.12 (0.74)	-0.25 (0.42)	0.42 (0.20)	0.09 (0.79)	0.25 (0.43)	0.46 (0.26)	0.80 (0.03)	-0.61 (0.14)	0.78 (0.12)	0.29 (0.49)	0.28 (0.54)
실효 세율	0.67 (0.01)	0.56 (0.09)	-0.41 (0.18)	0.22 (0.44)	-0.01 (0.97)	0.57 (0.05)	0.65 (0.08)	0.74 (0.06)	-0.69 (0.09)	0.94 (0.02)	0.29 (0.49)	0.52 (0.24)

주: 〈표 III-6〉의 표주 1~4 참조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4〉 실질GDP와 기타 세목의 상관관계: 전 기간

구분	전체기간			경기국면별					
	실질 GDP	추세제거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1)	(2)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기타 세수	0.989 (0.000)	0.103 (0.531)	0.060 (0.698)	0.989 (0.000)	0.990 (0.000)	-0.473 (0.041)	0.086 (0.719)	0.004 (0.984)	0.269 (0.225)
GDP 비중	0.560 (0.000)	0.174 (0.291)	0.215 (0.157)	0.572 (0.004)	0.550 (0.010)	0.349 (0.143)	-0.237 (0.315)	0.405 (0.055)	-0.152 (0.499)

주: 〈표 III-6〉의 표주 1~4 참조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5〉 실질GDP와 기타 세목의 상관관계: 2000년 전후

구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실질GDP		추세제거(1)		추세제거(2)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기타 세수	0.98 (0.00)	0.99 (0.00)	-0.33 (0.29)	-0.24 (0.39)	0.47 (0.08)	-0.02 (0.93)	0.80 (0.02)	0.87 (0.01)	-0.52 (0.23)	0.10 (0.88)	-0.15 (0.72)	-0.07 (0.88)
GDP 비중	0.60 (0.01)	0.71 (0.00)	0.41 (0.18)	-0.41 (0.13)	-0.22 (0.42)	-0.14 (0.61)	-0.76 (0.03)	-0.82 (0.03)	0.80 (0.03)	-0.88 (0.05)	0.20 (0.64)	-0.36 (0.43)

주: 〈표 III-6〉의 표주 1~4 참조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미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기능

가. 사용자료

KISVALUE의 외부감사대상 법인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앞서 소개한 Devereux-Fuest의 측정방법과 Buettner-Fuest의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법인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추정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0년부터 2013년이며 KISVALUE DB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체 관측치 수는 242,621개이다. 특히 DF 및 BF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는 KISVALUE에서 찾을 수 있는 개별 법인들의 신용평점이다. 이 신용평점은 NICE 신용평가회사에서 수행한 것으로 1부터 10까지의 스케일로 평가되고 7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외부차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는 전체 법인 수는 외감대상 법인들 중 재무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의 법인 수이다. 2000년 이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242,621개 기업 자료 중에서 225,861개의 기업자료에 신용평점이 부여되어 있다. 이 중 신용평점이 존재하는 법인 수 비중은 전체 대비 2000년 72% 수준에서 2003년 97% 수준으로 확대되어 유지되다가 2012년 이후 소폭 낮아져서 2013년 95.5% 수준이다.

신용평점이 존재하는 법인들의 재무자료 중에서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는 신용평점 7등급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재무자료는 총 92,151개로 신용등급 정보가 가용한 전체 기업수 대비 약 40.8%에 달하고 있다. DF 측정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자기업 비중은 KISVALUE에서 찾을 수 있는 적자기업 비중과 국세통계연보상의 결산서상의 당기순손실 법인의 전체 신고법인 대비 비중을 모두 고려한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KISVALUE 기업재무자료상의 적자법인 비중이 국세통계연보상의 적자기업 비중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세통계연보상의 비중과의 차이를 축소하며 KISVALUE DB의 유용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F 자동안정화 효과 측정방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적자기업 비중은 세무상 적자기업으로 우리가 사용할 기업회계자료상의 적자기업 비중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BF 자동안정화 효과 측정방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흑자기업이면서 신용제약이 있는 기업들의 비중 역시 세무상 흑자기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납세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상 흑자기업이면서 신용제약이 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DB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된다.

비록 세무조정에 대한 정보는 가용하지 않지만 재무제표상의 세전손실을 이후 연도의 세전이익에서 이월공제함으로써 세무상 이익에 근접한 세전이익을 추정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과거의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면 현재의 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법정한계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의 세부담액을 가중치로 가중평균한 Devereux-Fuest의 측정방법과 Buettner-Fuest의 측정방법에서 사용하는 법정한계세율도 낮아지며 신용제약 흑자기업들에게 발생하는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도 낮아지게 된다.

Devereux and Fuest(2009)의 분석에 사용된 영국의 기업자료들 중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투자재원 조달에 제약을 가질 것으로 응답한 기업들의 비율은 1980~2007년의 기간 동안 15~30% 수준이었다. 또한 Buettner and Fuest(2010)에서 사용된 독일 제조업 자료들 중에서 신용제약을 갖는 기업들의 비중은 심각한 경기침체 시기였던 2003년 55%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2007년 12% 수준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평균 40.8%에 달하는 기업들이 신용제약을 갖고 있으며 2000년 39.8%에서 2013년 43.4%로 지속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경기조절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수혜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6〉 외부감사 대상 법인 재무자료 현황

(단위: 개, %)

연도	전체 법인수	신용평점 존재		신용제약 기업 비중	흑자 및 신용제약 기업 비중	적자기업 비중	
		법인수	비중			KISVALUE	국세통계
2000	11,546	8,372	72.5	39.8	18.3	18.1	35.6
2001	12,583	9,022	71.7	38.2	17.6	17.6	34.6
2002	13,641	9,646	70.7	36.9	16.8	17.4	33.7
2003	14,379	14,026	97.5	40.9	26.3	18.3	33.7
2004	14,957	14,569	97.4	37.6	24.2	17.4	33.0
2005	15,623	15,200	97.3	36.4	22.0	18.7	32.8
2006	16,589	16,181	97.5	38.5	21.7	21.1	33.4
2007	17,566	17,159	97.7	40.7	22.1	23.2	33.7
2008	18,468	18,025	97.6	43.2	19.8	29.5	34.9
2009	19,334	18,692	96.7	42.0	20.0	27.3	33.4
2010	20,493	19,946	97.3	40.5	19.4	26.1	33.1
2011	21,693	21,060	97.1	42.3	18.6	29.4	34.1
2012	22,939	22,178	96.7	44.0	18.2	31.5	34.7
2013	22,810	21,785	95.5	43.4	18.3	31.0	34.7

- 주: 1. 신용제약기업 비중은 신용평점이 존재하는 법인 수 대비 신용평점이 7이상인 기업들의 비중임
 2. 흑자 및 신용제약기업 비중은 흑자이면서 신용제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 법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1. KISVAULE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은 흑자기업이면서 신용제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다. Buettner-Fuest(2010)에 제시된 독일의 동 비율은 2003년 50%를 상회했으나 추세적으로 낮아져서 2007년 15% 수준으로 낮아지며 평균 24%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흑자 신용제약기업 비중은 2003년 26.3%를 고점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져서 2013년 18%에 이르렀고 2000~2013년 기간 평균 비율은 20% 수준으로 나타나며 법인세제의 경기조절효과와 크기가 독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측정결과

1) Devereux-Fuest 측정방법 적용결과

Devereux and Fuest(2009)의 경우 신용제약기업들의 개별 재무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모든 흑자기업에 적용되는 법정한계세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DF 측정방식에 사용하는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은 전체 흑자기업이 직면한 법정한계세율의 가중평균이다. 기업이 직면한 법정한계세율을 추정할 때 재무제표의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 및 세무조정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무조정외의 경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재무제표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결손금 이월공제는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의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경우 이월공제 후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이 축소되어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을 구한 결과, 기업들의 한계세율은 평균 1.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금을 이월공제하기 전 회계장부상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기업이 직면한 법인세 한계세율 가중평균은 2001년 28%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반영한 후 27.6%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양상은 이후 모든 연도에서 관측된다.²⁸⁾

KISVALUE의 적자기업 비중을 이용하여 DF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2001년 이후 평균 4.2%로 추정되고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한 경우 평균 4.0%로 추정된다. 지방세분 포함 약 1.2%포인트의 법정한계세율 인화에 따른 경기조절 기능 축

28) 현재 세무상 세전이익 또는 과세표준은 개별 기업수준에서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정한계세율을 구했다. t 년 회계상 세전이익이 음(-)의 값이어서 적자기업인 경우 $t+1$ 년 양(+)의 소득에서 차감한 후 $t+1$ 년의 세무상 세전 이익의 근사치를 추정했다. 만약 t 년도에 발생한 적자규모가 $t+1$ 년 발생한 흑자규모보다 큰 경우 $t+1$ 년의 한계세율은 0의 값을 갖도록 하고 차감하고 남은 t 년도의 적자규모는 $t+1$ 년 이후 발생한 흑자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무상 세전이익의 근사치를 추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개별 기업자료에 적용한 후 법정한계세율을 해당 기업의 세금부담비중으로 가중평균했다.

소효과는 0.2%포인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Devereux-Fuest 경기조절 효과

(단위: %)

회계연도	법정세율 가중평균		KISVALUE 적자기업 비중		국세통계연보 적자기업 비중	
	이월결손금 공제 미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AS_DF1	AS_DF2	AS_DF1	AS_DF2
2001	28.0	27.6	5.8	5.7	1.0	1.0
2002	27.3	26.5	5.4	5.2	0.9	0.9
2003	27.6	26.7	6.3	6.1	2.0	2.0
2004	28.1	27.0	5.7	5.5	1.3	1.3
2005	26.2	25.0	4.7	4.5	1.0	0.9
2006	26.3	25.1	4.6	4.4	1.4	1.3
2007	26.3	25.2	4.7	4.5	1.9	1.8
2008	25.0	23.7	3.5	3.3	2.1	2.0
2009	22.5	21.1	3.3	3.1	2.0	1.8
2010	22.5	21.0	3.3	3.1	1.7	1.6
2011	22.6	21.2	3.0	2.8	1.9	1.8
2012	20.7	19.4	2.6	2.5	2.0	1.8
2013	20.7	19.3	2.6	2.4	1.8	1.7

- 주: 1. AS_DF1은 이월결손금공제 적용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을 이용한 DF 경기조절효과
 2. AS_DF2은 이월결손금공제 미적용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을 이용한 DF 경기조절효과
 3. 상기 세율은 지방세분 법인세를 포함

- 자료: 1. KISVAULE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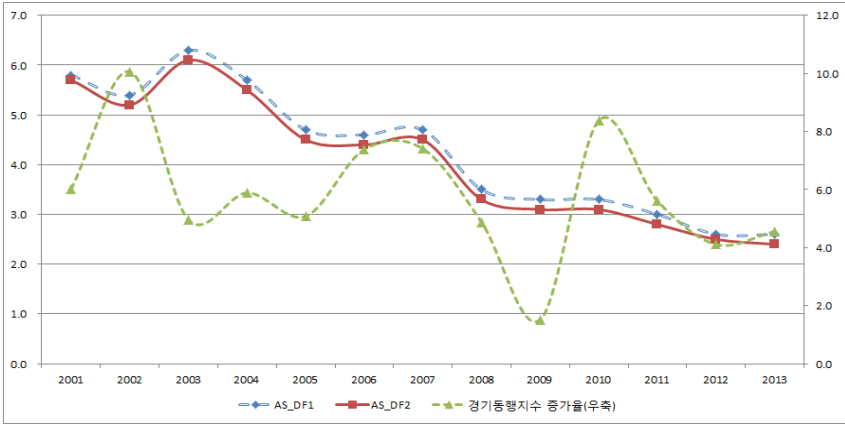
국세통계의 적자기업 비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성적으로는 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상의 적자기업 비중이 높아서 흑자기업에 한해서 발생하는 법인세제를 통한 투자 위축 완화효과는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의 33~35% 수준의 적자기업 비중을 활용하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자동안정화 효과는 1.0~2.1% 수준으로 결손금 이월공제 미적용 시 평균 1.6%, 적용 시 평균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경우의 자동안정화 효과 추정 결과는 Devereux and Fuest(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1% 수준의 자동안정

화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나 있는 DF 자동안정화 효과 추정치와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KISVALUE 적자기업 비중을 사용한 경우 2003~2005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DF 경기조절 효과가 경기둔화 시점에서 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2004년까지는 DF 경기조절 효과 추정치의 움직임과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의 움직임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같이 움직이거나 무관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상의 적자기업 비중을 사용한 경우 2005~2006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DF 경기조절 효과의 크기와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이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며 경기 확장기의 경기조절 효과보다 경기 수축기에 발생하는 음(-)의 충격을 더욱 적극적으로 완화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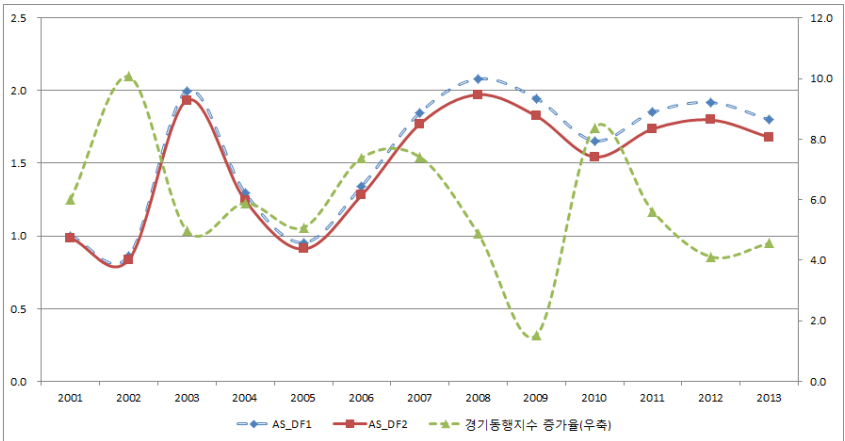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하고 KISVALUE 적자기업 비중을 이용하는 경우의 DF 경기조절 효과를 경기국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4년 이전까지는 수축기의 법인세제 경기조절 효과가 확장기의 효과보다 0.5%포인트 더 컸으나 2005년 이후 수축기 평균 경기조절 효과가 같은 기간 확장기 효과보다 0.9%포인트나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 적자기업 비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걸쳐 확장기보다는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림 Ⅲ-10]이 보여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9] 경기동행지수 변화와 DF 경기조절 효과: KISVALUE 적자기업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자료와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10] 경기동행지수 변화와 DF 경기조절 효과: 국세통계 적자기업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자료와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DF 측정방법의 경우 신용제약기업 중 흑자법인과 적자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 전체에서 신용제약기업의 비중과 적자법인의 비중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암묵적으로 신용제약기업 중 적자법인의 비중은 경제 전체 적자법

인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KISVALUE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봤을 때, 적자기업 중에서 신용제약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2003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제약기업들 중 50% 이상이 적자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DF의 측정방법보다는 이후에서 논의할 BF 측정방법과 같이 가용한 정보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8〉 경기국면별 Deveruex-Fuest 경기조정 효과: 이월결손금공제 적용
(단위: %)

	KISVALUE 적자기업 비중		국세통계 적자기업 비중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2001~2004 평균	5.4	5.9	0.9	1.5
2005~2013 평균	4.1	3.2	1.6	2.0
전체 평균	4.3	4.2	1.5	1.7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Buettner-Fuest 측정방법 적용결과

KISVALUE 기업재무자료에 포함된 신용평점을 활용하여 신용제약기업이면서 흑자기업의 비중을 구하고 Buettner-Fuest 측정방법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충격에 의한 투자감소 완화효과는 기간 평균 4.9~5.5% 수준으로 측정됐다. BF 자동안정화 효과 측정식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투자감소 완화효과는 2001년 이후 평균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 BF 자동안정화 효과는 2001년 이후 평균 4.9% 수준으로 추정된다.²⁹⁾ 결손금 이월공제로 인해 평균 2.7%포인트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이 하락한 것에 기인하여 BF 자동안정화 효과는 연평균 0.6%포인트 낮아진

29) 이월결손금공제 전과 후의 신용제약 기업들이면서 흑자법인들의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은 2.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DF 측정방식과 달리 신용제약 및 흑자 상태의 법인들만을 고려한 경우에도 법정한계세율은 이월결손금 공제 후 2000년 이후 연평균 2.7%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에서 카드 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을 정점으로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는 추세적으로 다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역할이 2000년 초반 이후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9〉 Buettner-Fuest 경기조절효과

(단위: %)

회계연도	흑자 및 신용계약 법인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		AS_BF1	AS_BF2
	이월결손금 공제 미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2001	30.7	28.4	5.4	5.0
2002	29.6	24.6	5.0	4.1
2003	29.6	26.1	7.8	6.9
2004	29.6	27.6	7.2	6.7
2005	27.4	25.0	6.0	5.5
2006	27.4	24.7	5.9	5.4
2007	27.4	25.8	6.0	5.7
2008	27.2	25.7	5.4	5.1
2009	24.1	22.6	4.8	4.5
2010	24.1	20.7	4.7	4.0
2011	24.0	21.0	4.5	3.9
2012	23.0	19.4	4.2	3.5
2013	23.0	20.6	4.2	3.8

주: 1. AS_BF1은 이월결손금 공제 미적용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을 이용한 BF 경기조절효과

2. AS_BF2은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을 이용한 BF 경기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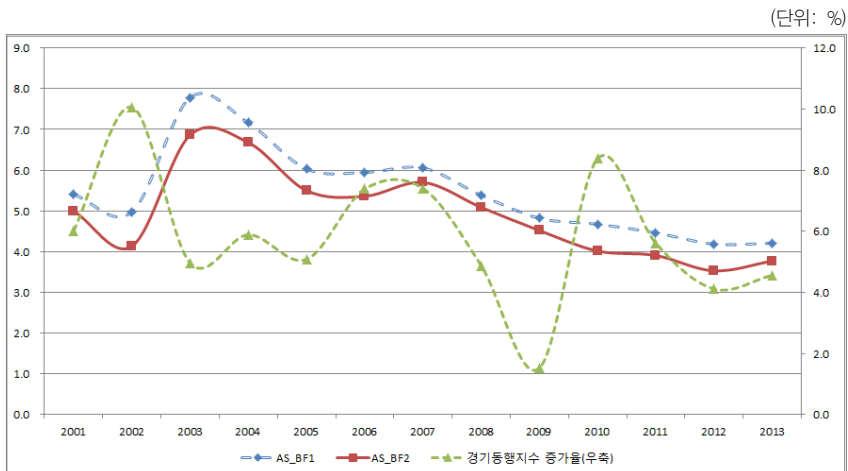
자료: KISVAULE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DF 자동안정화 효과 측정방식보다 신용계약 기업이면서 흑자기업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활용됨에 따라 BF 자동안정화 효과 추정치가 보다 개선된 측정결과로 판단된다. 연도별 BF 자동안정화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BF 자동안정화 효과는 대체적으로 2007년까지는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와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이후부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대체

적으로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이 낮은 연도, 즉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투자 위축을 완화하는 경기조절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이 높은 연도에는 추가적 경기 확장을 억제하는 경기조절 효과는 수축기의 투자 위축 완화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2010년을 제외하고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DF 경기조절 효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움직임은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의 기간별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2~2007년까지는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는 확장기보다 수축기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2008년부터는 평균적으로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까지는 수축기의 법인세 경기조절 효과가 확장기의 효과보다 약 1%포인트 정도 더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확장기와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 평균 수축기의 법인세 경기조절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2001~2007년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III-11] 경기동행지수 변화와 BF 경기조절 효과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경기종합지수(8차) 동행종합지수 월별자료와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20〉 경기국면별 Buettner-Fuest 경기조절 효과

(단위: %)

	이월결손금공제 미적용		이월결손금공제 적용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2001~2007 평균	5.7	6.8	5.2	6.2
2008~2013 평균	4.7	4.6	4.1	4.1
전체 평균	5.3	5.7	4.7	5.2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세제변화에 따른 경기조절효과

세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중 일반적으로 세제의 자동안정화 효과는 세율이 높을수록, 세수규모가 클수록, 누진적일수록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과세감면제도에 의해서도 세제의 자동안정화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의 부진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이 제도는 경기 확장기에 추가적으로 경기를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의 구성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세제의 자동안정화 효과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납세자들의 납세신고서와 그에 딸린 부속서류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앞에서 분석한 결과 중에서 세제의 구성 요소의 변화에 기인하는 세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조금이라도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법인세이며, 그 중에서도 법인세율과 결손금 처리방식 정도에 국한된다.

가. 법인세율

기존 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은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며 이는 법인세에도 적용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경기조절 효과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여타 여건이 동일할 때 세율 인상은 경기 확장기에 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세율 인상 전보다 세후소득의 축소를 통해 투자 확대를 억제하여 경기의 추가적 확장을 억제한다. 경기 수축기에는 높은 세율이 기업소득 감소에 따른 세금부담 축소를 통해 투자 위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경기조절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DF 및 BF의 경기조절 효과를 기준으로 2001년 이후 모든 연도의 국세분 법정세율이 실제 적용된 법정세율보다 1%포인트씩 인상됐다고 가정하고 경기조절 효과를 다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1%포인트 세율 인상은 평균적으로 0.2%포인트의 경기조절 효과 제고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이월결손금 공제 전후의 세율 변화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의 변화와 일치한다.³¹⁾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변동에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인세제가 순수이윤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세율 인상의 효과가 경기 수축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율 인상을 통해 수축기에 경기 위축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는 있겠으나 세율 인상은 경기 확장기에도 경기 확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구조개혁 등 여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세계경기가 호전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 경기 자동안정화 장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30) 국세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지방세분을 포함한 법인세율 1.1%포인트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하다.

31) DF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법정한계세율의 가중평균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1.2%포인트의 법정한계세율 인하효과가 0.2%포인트의 경기조절 효과의 축소를 가져왔다. 또한 BF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후 법정한계세율의 가중평균이 이전보다 2.7%포인트 낮아졌고 이에 따라 BF 경기조절 효과는 0.6%포인트 축소됐다.

나. 기업의 결손금 처리방식

DF 및 BF 측정방법의 특징 중 하나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전면 허용해서 손실과 이익을 세법상 매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의 법인세제 경기조절 효과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vereux and Fuest(2009)와 Buettner and Fuest(201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무상 손실이 발생한 기업들에 그만큼을 돌려주는 매우 관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를 법인세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자기업의 비중은 0이 되므로 법인세의 경기조절 효과의 크기는 법정한계세율과 신용제약기업 비율의 곱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2001년 이후 자료에 적자기업의 비중으로 0을 적용하면, DF 및 BF 측정방식 모두의 경우 법인세제로부터 발생하는 경기조절 효과는 연평균 10%수준으로 매해 9%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BF 경기조절 효과가 DF 경기조절 효과보다 소폭 높게 나타나는 것은 BF 경기조절 효과 추정에 사용된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이 DF 경기조절 효과 추정에 사용된 것보다 소폭 높기 때문이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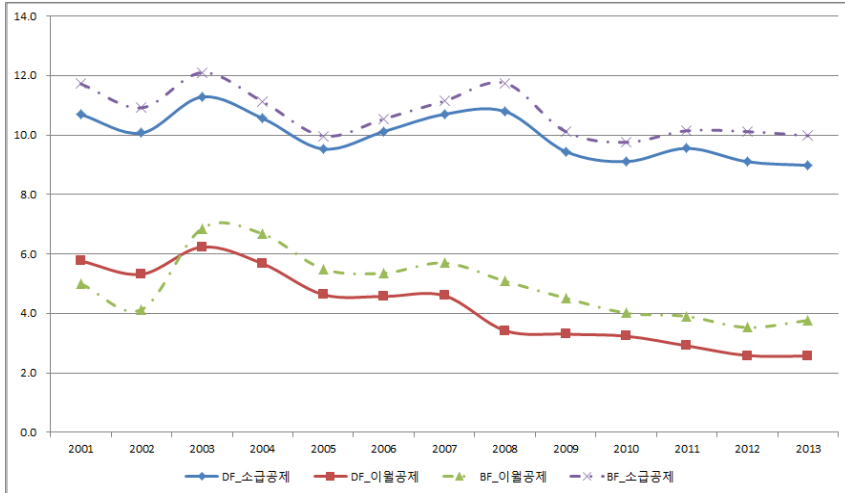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완전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경기조절 효과의 추이가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됐다. 이월공제만을 허용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경기조절 효과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공제만을 허용하는 경우 두 측정방법 모두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3.7%포인트였다. 그러나 완전소급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약화되는 경기조절 효과가 둔화되어 해당 차이는 2.3%포인트로 축소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용제약기업 중 적자기업의 비중이 지속 확대되면서 신용제약기업 중 흑자기업 즉, 경기변동에 따른 법인세 경기조절 효과가 발생하는 대상자들이 축소된 것에 기인하여 DF 및 BF 경기조절 효과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보다 빠르게 약화되는 현상이 결손금 이월공

32) Devereux and Fuest(2009)의 경우 신용제약기업들의 개별 재무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모든 흑자기업에 적용되는 법정한계세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점과 신용제약기업들의 재무정보 및 납세정보를 활용하는 BF 측정방식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DF 측정방식에 사용된 법정한계세율 가중평균은 전체 흑자기업이 직면한 법정한계세율을 가중평균한 것이다.

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나타난 것이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완전히 허용하는 가상적인 경우에는 신용제약기업 중에서 세무상 적자기업이 없기 때문에 경기 수축기에 더욱 높은 경기조절효과가 나타난다.

[그림 III-12] 경기조절 효과 비교: 완전 소급공제 vs 이월결손공제

(단위: %)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21> 결손금 처리방식에 따른 경기국면별 경기조절 효과 비교

(단위: %)

DF 측정 방식		완전 소급공제 적용		이월결손금공제 적용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2001~2004 평균	10.1	10.9	5.4	5.9
	2005~2013 평균	9.7	9.6	4.1	3.2
	전체 평균	9.8	10.2	4.3	4.2
BF 측정 방식		완전 소급공제 적용		이월결손금공제 적용	
		확장기	수축기	확장기	수축기
	2001~2007 평균	10.6	11.7	5.2	6.2
	2008~2013 평균	10.0	10.6	4.1	4.1
	전체 평균	10.4	11.1	4.7	5.2

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완전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의 경기조절 효과를 경기국면별로 비교하고 있는 위의 표를 살펴보면, 두 가지 측정방법에서 모두 경기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더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DF 경기조절 효과는 2004년까지 경기 수축기의 효과가 확장기의 효과보다 컸으나 이후는 약 0.9%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급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05~2013년 평균 수축기 경기조절 효과는 9.6%로 크게 개선되어서 확장기 효과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경기국면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금의 완전 소급공제를 적용한 BF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평균 수축기 경기조절 효과가 10.6%로 확장기 평균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이익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에 기업이 직면할 법정한계세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경기조절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법정한계세율 인하로 인해 이월결손금공제는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발표된 이월결손금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정책방향은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전 소급공제의 경우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액만큼 신용계약기업들의 투자여력이 확보되므로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다소 관대한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확대하는 경우 세수 손실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가 심화될 수 있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려요인은 DF나 BF 측정방법의 이론적 배경인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이다. 신용계약기업들은 투자할 의사는 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가용한 재원을 한도로 투자를 수행하며 재원만 확보되면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는 전제인 것이다. 따라서 결손금소급공제를 확대하더라도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6.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방식의 평가방법을 고려했다. 세제의 자동안정화 기능 관련 초기 연구에서 사용된 케인즈의 승수모형을 사용하여 주요 세목 및 총국세수입의 경기조절 기능을 평가했다. 또한 조세관련 지표와 실질GDP의 경기변동분 사이의 상관분석을 통해 경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기조로 운용되어 왔는지를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총량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기 방식으로는 세계개편에 따른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의 변화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개별 기업의 신용평가정보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법인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승수모형을 사용한 경우 3대 세목 중에서 법인세의 경기조절 기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추정됐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기조절 기능은 연도별 등락을 보이지만 추세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소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면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이후 수축기의 경기조절 기능이 확장기의 경기조절 기능보다 더 크게 관측됐고, 법인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수축기의 경기조절 기능이 지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대 세목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의 경기조절 기능의 추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수축기의 경기조절 기능이 지속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세목의 경기조절 기능을 함께 고려한 경우 개별 세목 분석에서 경기조절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에 의해 전체적인 모습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 관련 지표들과 실질GDP의 경기변동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대체적으로 Furceri and Karras(2011)에서처럼 경기국면에 따라 세율을 달리 조정해서 확장기의 추가적 확장을 억제하고 수축기의 추가적 수축을 제한하는 적극적 경기대응보다는 경기 수축기에 발생한 세수 부족분은 채무로 조

달하고 경기 확장기에 발생한 세수 여유분으로 상환한다는 조세평탄화(tax smoothing)이론을 지지해준다. 세목별 분석에서 예외적인 경우도 관측되는데, 실질GDP의 추세를 제거하는 필터링 기법에 따라 실질GDP 경기변동분과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추정되며 일의적으로 조세정책 운용기조를 경기순응적 내지 경기역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운용기조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균 실효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채무를 활용하는 조세평탄화 이론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하여 Devereux and Fuest(2009)와 Buettner and Fuest(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를 추정했다. 이들의 연구는 신용계약기업들 중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재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규모는 내부 가용재원에 의해 좌우되므로 경제충격에 의해 축소될 투자규모 중 법인세제에 의해 얼마나 투자규모 축소가 완화되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신용계약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들은 경제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제를 통해 투자 위축 완화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이 두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계약기업 중 흑자기업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있다. Devereux and Fuest(2009)의 경우 영국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계약 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나 신용계약 기업들 중 흑자기업인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맞는 추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Buettner and Fuest(2010)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독일 제조업 기업자료와 납세자료를 활용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하는 측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를 측정할 결과,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적자기업을 판단하는 경우 연평균 5% 수준의 투자위축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evereux and Fuest(2009)의 추정방식에 국세통계연보상의 적자기업 비중을 사용하면 연

평균 2% 미만의 낮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계연보상 적자 기업의 비중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DF 추정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DF 방식은 BF 방식보다 적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다.

개별 기업자료를 이용한 DF 및 BF 경기조절 효과 측정방식을 활용하여 세율 인상과 결손금처리 방식의 변경이 경기조절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은 경기조절 효과를 0.2%포인트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본 분석에서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방식으로 세무상 세전소득을 추정하고 있는데, 결손금을 이월공제가 아닌 완전 소급공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연평균 10% 수준의 경기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두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DF의 경우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고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BF의 경우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한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다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율 인상은 효율성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기 확장기에 성장을 억제하는 대가로 경기 수축기에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확대는 경기 수축기에 늘어나는 적자법인들이 과거에 낸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업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영속성을 추구하므로 기업 탄생부터 청산시점까지 전 기간에 걸쳐 이익과 손실을 동일하게 취급해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은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이 무리한 가정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제의 경기조절 효과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신용제약기업 중 흑자법인의 비중이다. 투자재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운 신용제약기업 중 흑자법인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기조절 효과는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이후 신용제약기업 중 흑자법인의 비중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소폭이나마 확대 추이를 보였으나 2004년 66.2%를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44.1%로 나타난다. 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영세한 신용제약기업들이 보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만성적인 적자기업들의 퇴출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IV. 결론

정부 정책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은 재량적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세수와 경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추가적 경기과열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재량적 재정지출 조정과 달리 정책 집행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 큰 장점이 있다. 재량적 재정지출보다 바람직한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제의 누진도를 무한히 확대할 수 없다. 이른바 효율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정부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중요한 정책과제임에 틀림없다.

구체적인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 경기국면별로 주요 세목의 과세베이스 및 세수의 변동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소득세 국민계정 과세베이스와 이상치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국세통계 과세베이스를 제외하고 여타 세목의 국민계정 및 국세통계 과세베이스 증가율 분포가 경기 변화의 폭보다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경기국면의 변화보다 큰 세수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의 변동성과 세수 변동성이 축소된 2000년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의 경우에도 경기의 변동성보다 세수의 변동성이 더욱 크고 2000년 이후에는 이전보다 변동성은 축소됐으나 여전히 세수의 변동성이 경기의 변동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세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에 경상GDP 대비 세수탄성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한 세수 전망기법을 고안하는 것도 세수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주요 세목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의 고전적 추정방법인 승수효과모형을 이용한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여타 세목의 실효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경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경기 국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기보다는 평탄한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기침체에 세수 부족분은 부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조세평탄화(tax smoothing) 이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끝으로 법인세의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경우 자동안정화 효과는 2000년 이후 평균 5% 수준으로 평가되고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폭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포인트의 세율 인상이 0.2%포인트의 경기조절 효과 확대를 초래하며 결손금을 완전 소급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약 5~6%포인트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효율성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저해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간 국내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시험적 연구로서 경기국면별 과세베이스 및 세수가 보이는 특징부터 주요 세목의 경기조절 기능을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세 관련 통계자료는 주로 연도별 총량자료이지만 구체적 세제 변화에 따른 경기조절 기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다년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 접근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제에 한하여 세율 및 결손금 처리방식의 변화에 따른 경기조절 기능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세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조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평가하고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자료의 활용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향후 관련 연구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세청 납세자료의 활용 가능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은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용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각 주요 세목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에 입각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거시재정 효과 분석에 활용되고 DSGE 분석과 같이 각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큰 분석 모형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는 여러 또 다른 가정이 전제되고 있어서 항상 큰 모형이 분석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모수의 합리적 추정에 기초한 보다 큰 규모의 분석 모형은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제 변화의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및 분석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향후 소득세제의 경기자동안정화 기능에 대한 평가도 개인의 유동성 제약과 납세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미시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유도하는 기재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하며 경기국면별 특성을 활용하는 조세정책 관련 연구의 발전이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김학수, 『기업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3-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박기백,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 박기백·박형수,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박형수·박명호·김학수·정재호, 『증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 12-02, 한국조세연구원, 2012.
-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10.
- Auerbach, A. and D. Feenberg, “The Significance of Federal Taxes as Automatic Stabiliz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3), 2000, pp.37~56.
- Baungsaard, T. and S. A. Symansky, “Automatic Fiscal Stabilizer,” IMF Staff Postition Note, 2009.
- Buettner, T. and C. Fuest, “The Rol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s an Automatic Stabilizer,” *International Tax & Public Finance*, 17, 2010, pp.696~698.
- Cohen, D. and G. Follette, “The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Quietly Doing Their Thing,”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Economic Policy Review*, 6(1), 2000, pp.35~68.
- Devereux, M.P. and C. Fuest, “Is the Corporation Tax an Effective Automatic Stabilizer?,” *National Tax Journal*, 62(3), 2009,

pp.429~437.

Eilbott, P. "The Effectiveness of Automatic Stabilize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6(3), 1966, pp.450~465.

Furceri, D. and G. Karras, "Average Tax Rate Cyclicalities in OECD Countries: A Test of Three Fiscal Policy Theories," *Southern Economic Journal*, 77(4), 2011, pp.958~972.

Musgrave, R. A. and M. H. Miller, "Built-in Flexibi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8(1), 1948, pp.128~134.

Musgrave, R.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1959.

Romer, C., "Changes in Business Cycles: Evidence and Explana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3(2), 1999, pp.23~44.

Vegh, C. A. and G. Vuletin, "How is Tax Policy Conducted Over the Business Cycl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7(3), 2015, pp.327~370.

〈웹사이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년 7월 3일 접속)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5년 7월 3일 접속)

부록 1. 승수모형을 이용한 세계의 자동안정화 효과

본문 제Ⅲ장의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는 3대 기간세목을 모두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세목별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의 도출 과정을 살펴본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Musgrave and Miller(1948)을 비롯한 승수모형을 이용해서 세계의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본 연구는 승수모형에 기초한 기존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포괄한다. 먼저 세계의 경기자동안정화 효과(γ)는 Musgrave and Miller(1948)에서처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amma = 1 - dY^{AS}/dY^X$$

여기서 dY^{AS} 는 세계를 통한 경기 자동안정화 시스템이 있는 경제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GDP의 변화를, dY^X 는 해당 경기 자동안정화 시스템이 없는 경제에서 총수요 충격에 의해 발생한 소득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세계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 γ 는 세계에 의해 완화된 소득 변화분($dY^X - dY^{AS}$)을 세계가 없는 경제의 소득 변화분(dY^X)에 대한 비율로써 세계가 없는 경제에 주어진 총수요 충격에 의해 소득 변화분 1원당 세계에 의해 축소되는 소득 변화분을 나타낸다.

먼저 세계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경제를 고려한다.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제의 생산은 가계와 기업의 소득, Y^H 와 Y^F 로 분배된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도입되지 않아서 각 경제주체의 분배소득은 가계와 기업의 세후소득인 Y^{dH} 와 Y^{dF} 와 동일하게 되고 한계소비성향(c) 및 한계투자성향(i) 그리고 각 주체의 가치분소득에 따라 소비와 투자를 한다. 이러한 모형은 아래의 모형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Y^X &= C + I + G \\
C &= cY^{dH} + C_0 \\
Y^{dH} &= Y^H \\
I &= iY^{dF} + I_0 \\
Y^{dF} &= Y^F \\
Y^X &\equiv Y^H + Y^F
\end{aligned}
\quad \text{모형 (1)}$$

위 모형의 총생산(Y^X)은 $Y^X = (1 - c\rho_H - i\rho_F)^{-1}A$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ρ_H 와 ρ_F 은 각각 노동과 기업소득 분배율을 나타내고 $A = C_0 + I_0 + G$ 로써 autonomous expenditures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 경제에 주어진 총수요 충격에 의해 초래되는 소득 변화분(dY^X)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Y^X/dA = (1 - c\rho_H - i\rho_F)^{-1}$$

경제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상기 모형 (1)은 모형 (2)로 나타낼 수 있다. 소득세는 τ_p 의 실효세율로 부과되고, 법인세는 τ_C 의 실효세율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τ_V 의 실효세율로 부과된다. 소득세를 비롯하여 3대 세목이 부과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가치분소득은 더 이상 분배소득 합계와 동일하지 않다.³³⁾ 우리가 관측하는 국민계정상의 소비지출은 부가가치세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가계는 소비지출 1원당 $1 - \hat{\tau}_V = \tau_V / (1 + \tau_V)$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로 모형에 내재화한다.

33) 본 모형에서는 소득세의 누진구조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모형이 갖는 여러 한계 중 하나이지만 총량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본 모형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egin{aligned}
Y^{AS} &= C + I + G \\
C &= cY^{dH} + C_0 \\
I &= iY^{dF} + I_0 \\
Y^{dH} &= (1 - \tau_P)Y^H - (1 - \hat{\tau}_V)C \quad \text{모형 (2)} \\
Y^{dF} &= (1 - \tau_C)Y^F \\
Y^{AS} &\equiv Y^H + Y^F
\end{aligned}$$

앞에서와 같이 가계와 기업의 세후소득을 소비함수와 투자함수에 각각 대입하고 순차적으로 총수요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여 모형 (2)의 총생산을 결정하고 경제에 주어진 총수요 충격에 의해 초래되는 소득 변화분(dY^{AS})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rac{dY^{AS}}{dA} = \frac{1 + c(1 - \hat{\tau}_V)}{1 + c(1 - \hat{\tau}_V) - c\rho_H(1 - \tau_P) - i\rho_F(1 - \tau_C)(1 + c(1 - \hat{\tau}_V))}$$

위에서 정의된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 $\gamma = 1 - dY^{AS}/dY^X$ 에 $dY^{AS}dY^X$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3대 세목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를 측정하는 식을 도출할 수 있다.

$$\gamma_{all} = \frac{c\rho_H(1 - (1 + (1 - \hat{\tau}_V))^{-1}(1 - \tau_P)) + \rho_F(1 - i(1 - \tau_C))}{1 - c\rho_H(1 + c(1 - \hat{\tau}_V))^{-1}(1 - \tau_P) - \rho_F i(1 - \tau_C)}$$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세목만을 모형에 내재화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의 측정식을 <표 III-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부록 2. 경기순환국면별 경제동향

〈부표 II-1〉 경기순환국면별 경제동향

구분	순환 국면	기간	주요 경제동향
제1순환 (1972. 3~ 1975. 6)	확장기	(1972. 3~ 1974. 2)	○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향정책,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견실한 성장
	수축기	(1974. 2~ 1975. 6)	○ 사채동결 및 금리인하 정책(8.3조치) ○ 제1차 석유파동에 의한 물가급등으로 경기위축 ○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으로 수축심도는 미약
제2순환 (1975. 6~ 1980. 9)	확장기	(1975. 6~ 1979. 2)	○ 중동건설 특수, 중화학공업 지향 산업구조 정비, 부동산 경기과열로 경기활성화
	수축기	(1979. 2~ 1980. 9)	○ 제2차 석유파동, 10.26, 5.17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크게 위축 ○ GDP, 제조업 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대부분 최저치 기록
제3순환 (1980. 9~ 1985. 9)	확장기	(1980. 9~ 1984. 2)	○ 물가안정시책, 세계경기 회복으로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가
	수축기	(1984. 2~ 1985. 9)	○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의 소폭 증가로 미미한 경기 회복세 ○ 무리한 투자확대 지양,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으로 국내 경기 위축 ○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제4순환 (1985. 9~ 1989. 7)	확장기	(1985. 9~ 1988. 1)	○ 3저 현상(저유가, 저금리, 달러약세)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호전
	수축기	(1988. 1~ 1989. 7)	○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국내수요도 활기를 띠면서 10~12%의 GDP성장률 달성 ○ 노사분규 격화, 부동산 가격 및 임금의 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부진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은 계속 증가세를 보여 수축심도는 약해짐
제5순환 (1989. 7~ 1993. 1)	확장기	(1989. 7~ 1992. 1)	○ 신도시 건설계획, 중화학공업부문의 대규모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 주도하에 경기회복
	수축기	(1992. 1~	○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자산효과가 창출되어 민간의 소비수요 증대

		199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열된 건설경기가 진정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급속 위축 ○ 미·일 등 선진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부진 지속
제6순환 (1993. 1~ 1998. 8)	확장기	(1993. 1~ 199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가격 경쟁력회복 등으로 전기전자제품 중심의 수출이 증가해 경기상승 주도 ○ 자본자유화로 외국자본차입을 통한 대규모 설비투자 확대
	수축기	(1996. 3~ 199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와 주력제품의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수출부진 ○ 대형투자자 인한 외채급증, 대기업 도산 속출 및 동남아국가들의 외환위기 한국전어로 외환위기 발생
제7순환 (1998. 8~ 2001. 7)	확장기	(1998. 8~ 200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의 디지털 붐에 힘입어 IT 관련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투자도 증가해 경기회복 ○ 외환위기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진정되면서 소비도 회복
	수축기	(2000. 8~ 200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IT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수요의 감소로 IT제품의 수출이 부진하여 경기수축 ○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과 소비둔화도 경기수축에 기여
제8순환 (2001. 7~ 2005. 4)	확장기	(2001. 7~ 200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대출확대 등 내수 경기부양책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회복 ○ '02년 하반기에는 내수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수출의 회복으로 경기상승이 지속
	수축기	(2002. 12~ 200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년은 소비와 투자의 침체, 신용 및 투신사 유동성위기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 '04년 수출호조에에도 불구하고 소비·투자 등의 내수부진이 계속 부진하여 경기회복이 지연
제9순환 (2005. 4~ 2009. 2)	확장기	(2005. 4~ 200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침체에서 벗어나 수출호조와 함께 완만한 경기회복 ○ '07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출상승이 지속되었으며 소비·설비투자도 호조
	수축기	(2008. 1~ 200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상반기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었으나, 유가급등 등으로 인해 내수부문에서 경기둔화 가시화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여파로 '08년 4/4분기 이후 수출, 내수 모두 급락
제10순환 (2009. 2~)	확장기	(2009. 2~ 20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당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09년 2/4분기부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09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도 상승세
	수축기	2011.8~	

자료: 통계청, 『2015년 6월 경기종합지수』, 통권 414호, 2015년 8월, pp. 77~78.

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과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김 학 수

본 연구는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경기국면별 특성을 살펴보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경기조절 기능을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기존 해외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의 움직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 이후 과거보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세베이스 및 세수의 증가율이 과거보다 둔화되면서 세수탄성치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간별 예외가 관측되기는 하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와 세수는 수축기에 대체적으로 높은 경상 GDP 대비 탄성치를 보인 반면 법인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축기에 낮은 탄성치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세목 중 법인세가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해 왔음을 시사한다.

주요 세목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의 고전적 추정방법인 승수효과모형을 이용한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여타 세목의 실효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경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경기 국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여 경기

를 조절하기보다는 평탄한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기침체에 세수 부족분은 부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조세평탄화(tax smoothing) 이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끝으로 법인세의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경우 자동안정화 효과는 2000년 이후 평균 5% 수준으로 평가되고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폭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포인트의 세율 인상이 0.2% 포인트의 경기조절 효과 확대를 초래하며 결손금을 완전 소급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약 5~6%포인트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The Volatility of Tax Revenues and Taxes as Automatic Stabilizers over Business Cycles

Hag-soo Kim

In this research report, it is discussed how tax revenues and tax bases are behaved over business cycles since 1970. We also tried to evaluate the role of taxes as automatic stabilizers using different method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the availability of data. The volatilities of revenues and bases tend to be larger than the overall volatility of Korean economy. However, they are reduced after 2000, but still larger than the overall volatility of Korean economy. As the annual change rates of tax bases and revenues and the nominal GDP elasticities become smaller than the past, even if there are a few exceptions, during economic downturns the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and bases show lower elasticities with respect to the nominal GDP than those for economic booms while the opposite results are observed for personal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This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the corporate income tax plays a main role as automatic stabilizers rather than other major taxes.

In order to evaluate more about the role of taxes as automatic stabilizers in detail, we employ three different methods according to the availability of data. First, utilizing simple multiplier models as a classical tool for estimating the size of automatic stabilizer results in that the size

of automatic stabilizer for corporate income tax is larger than other taxes, which is due to larger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than others. Secondly,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ax related variables such as effective tax rates and the ratio of revenues to GDP and cyclical components of GDP supports the tax smoothing theory implying that Korean governments do not adjust effective tax rates in order to stabilize the economic cycles. Lastly, using individual firm's financial statements to mimic a few items in individual tax returns, the size of automatic stabilizer for corporate income tax is about 5% on average after 2000 and is slightly larger during downturns. In addition, the increase in corporate tax rate by 1%point enhances the size of automatic stabilizer by 0.2% and allowing the perfect carry-backward for loss making firms will increase the stabilizing effect by 5~6%point.

■ 저자약력

김 학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Duke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현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15-03

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과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발행	행	2015년 12월 31일
저자	자	김학수
발행인	인	박형수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5,000원
조판 및 인쇄	쇄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978-89-8191-789-0 933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